

상품 ·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집
- 니스9판 기준 -

2007. 10.

특 허 청

목 차

I. 니스9판과 우리의 분류체계 (유사군코드)	3
II.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총론	9
III. 유사군코드 개관	19
IV. 상품 유사군코드 해설	39
V.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	161
VI. 판례반영목록	177

I . 니스 9판과 우리의 분류체계 (유사군코드)

I. 니스 9판과 우리의 분류체계 (유사군코드)

□ 니스 9판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니스협정에 따라 정해진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9판(이하 “니스 9판”이라 함)이 2007. 1. 1.부터 2011. 12.31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는 국제적인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니스 9판을 반영하여 출원 및 등록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류제목을 보고 대강의 분류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제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품;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제(消火劑); 조질제(調質劑) 및 땀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제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방청제 및 목재보존제; 착색제; 매염제(媒染劑); 미가공 천연수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청정제, 광택제, 연마제; 비누; 향료, 정유(精油), 화장품, 모발로션; 치약
제4류	공업용 유(油) 및 그리스(Grease); 윤활유; 먼지흡수제, 먼지흡윤제 및 먼지흡착제; 연료(자동차 휘발유를 포함한다), 발광제;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5류	약제 및 수의과용 약제; 의료용 위생제; 식이요법제, 유아용 식품; 김스 및 연고류; 치과용 충전재료 및 치과용 왁스; 소독제; 유해동물 구제제; 살균제, 제초제
제6류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금속제 건축재료;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 철도노선용 금속재료;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전기용은 제외한다); 철제품, 소형금속제품; 금속관; 금고;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금속제품; 광석
제7류	기계 및 공작기계;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농업용 기구(수동식은 제외한다); 부란기(孵卵器)
제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칼붙이류; 휴대용 무기; 면도칼
제9류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멍 및 교육용

-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 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 정보기억 매체 및 녹음반; 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소화기(消火器)
- 제10류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 제11류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 제12류 수송기계기구; 육상,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
- 제13류 화기(火器); 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 제14류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보석류, 귀석(貴石); 시계용구
- 제15류 악기
- 제16류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인쇄물; 제본용 재료; 사진; 문방구용품;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미술용 재료; 화필(畫筆) 및 도장용 붓;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한다); 교육용 재료(장치는 제외한다);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인쇄용 활자; 프린팅 블록(스테레오 타입, 연판)
- 제17류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액(Gum), 석면, 운모 및 이들의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조용 압출성형플라스틱;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비금속제 신축관
- 제18류 가죽과 모조 가죽 및 그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물가죽(獸皮);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우산, 양산 및 지팡이; 채찍, 마구(馬具)
- 제19류 비금속제 건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기념물
- 제20류 가구, 거울, 액자;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상아, 고래수염, 조개 껍질, 뼈,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21류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빗 및 스펀지; 솔(회화용과 도장용은 제외한다); 솔 제조용 재료; 청소용구, 강철 울(Steel wool);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건축용은 제외한다);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2류	로프, 끈, 망, 텐트, 차양막, 타폴린, 돛, 포대(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충전용 재료(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 식물용 미가공 섬유
제23류	식물용 실(絲)
제24류	식물 및 식물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6류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브레이드(Braid);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제27류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 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제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
제29류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육(肉)즙; 절임, 조림,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실과 채소;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계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식용 유지(油脂)
제30류	커피, 차(茶),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Sago), 대용커피; 곡분(穀粉) 및 곡물조제품, 빵, 과자, 빙과;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파우더; 소금, 겨자; 식초, 소스(조미료); 향신료; 얼음
제31류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살아있는 동물;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종자, 자연식물 및 꽃; 사료; 맥아
제32류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제33류	알콜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제34류	담배; 흡연용품; 성냥
제35류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38류	통신업; 방송업
제39류	운송업;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대행업(Travel arrangement)
제40류	재료처리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 제44류 의료서비스업; 수의사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재산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 니스 9판과 우리의 분류체계와의 관계

- 주의할 사항은 니스 9판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분류체계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우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분류체계는 **상표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376호)의 별표 1(상품류구분) 및 별표 2(서비스업류구분)이다.
- 여기에서 위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 명칭은 특허청고시 제2006-18호(2006.12.20 자 관보)로 고시하고 있다.
- 구체적인 유사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36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심사를 하고 있다.
- 결국 우리는 출원과 등록업무에서는 니스 9판을 사용하지만, 유사판단을 위한 심사에서는 기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판단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니스 9판과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분류체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책은 우리가 유사판단 심사에 사용하고 있는 유사군코드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대략의 범위를 간단히 기술하고, 각 유사군코드가 니스 9판에서는 어떤 류에 해당하며 그 유사군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표로 보여주고 있다.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히 제외되는 상품(서비스업)”에 수록하였다.
- 해설 앞부분에는 유사군코드 체계의 기본이 되는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총론”을 수록하여 유사군코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해설 뒷부분에는 유사군코드 적용의 예외기준이 되는 “판례반영목록”을 수록하여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Ⅱ.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총론

Ⅱ.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총론

2002. 6. 26 개정 특허청예규 제23호

2006. 11. 29 개정 특허청예규 제36호

1. 목 적

가. 이 심사기준은 1998. 2. 28 이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이하 “구 분류”라 한다)에 따라 출원·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하“지정상품 등”이라 한다)과 1998. 3. 1 이후의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서비스업 분류(이하“니스분류”라 한다)“에 따라 출원·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간의 유사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상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나.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위임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여 상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배 경

가. 니스분류는 각 국가 간에 상품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원과 등록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WIPO의 주도로 정립된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의 국제적 표준으로서 매 5년 마다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 발행된다.

나. 니스협정 제2조 (1)에 의하면 출원 및 등록은 니스분류에 따르더라도 상표등록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의 판단은 각 동맹국이 자국의 거래실정에 따라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1998. 3. 1 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등 분류방식을 구 분류에서 니스분류로 전환하면서 유사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니스분류에 의하되 지정상품 등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은 구 분류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라. 이 심사기준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1998.3.1 이후 적용해 온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을 2007.1.1부터 시행되는 니스 9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한 것이다.

3. 유사군 코드

가. 정 의

1) “유사군 코드”라 함은 1998.3.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2.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998. 3. 1 이후에 신설 또는 변경된 지정상품 등은 구 분류 체계와 관계없이 유사군 코드를 신설하거나 변경·분할·통합할 수 있다.

2) 유사군 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영문자 1자와 구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와 상품군(서비스업군)을 표시하는 4자리의 숫자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번호의 뒤에 따로 가지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3)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른 지정상품 등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식별기호(A, B 등)를 5자리로 된 기본번호 뒤에 따로 표시하며, 이들 간의 유사관계는 “비고 유사(비고란에 의해 유사 관계로 표시한 상품을 뜻한다)”로 표시한다.

〈유사군 코드 부여 기준 및 식별방법〉

G	13	01	B
---	----	----	---

- G : Goods(상품), S : Services(서비스업)
- 13 : 구 분류 제13류(비누와 세제)
 - * 상품 1~53류(53개 류), 1류=>01, 2류=>02
 - * 서비스업 101~112류(12개 류), 101류=>01, 102류=>02
- 01 : 구 분류 제13류 제1군(비누류)
- B : “비고 유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기호(A, B 등으로 표시)
- 가지번호 : G1301B-1(예시)

나. 유사판단기준

1) 통 칙

가) 니스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나) 니스 분류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의 동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고 유사”로 표시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라) 각각의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마) 유사군 코드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유사군 코드의 상위 5자리 글자 중 어느 1자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유사군 코드의 상위 5자리 글자가 모두 일치하면 6번째 자리의 문자(“비고 유사”를 나타내는 식별기호)에 관계없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 “비고 유사”로 따로 표시한 유사군 코드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 유사군 코드에 의한 유사판단(예시) 〉

유사군 코드		판 단	판 단 기 준
G0101	S0101	비유사	G(상품), S(서비스업)
G1001	G1002	비유사	G1001(화학제), G1002(접착제)
S0201	S0301	비유사	S0201(금융업), S0301(보험업)
G3908	G3908B	유 사	상위 5자리 글자가 동일
G3907A	G3907B	유 사	상위 5자리 글자가 동일
G4401B	G4509A	유 사	비고 유사
G4510B	G4509A	유 사	비고 유사
G4401B	G4510B	비유사	비고 유사 관계가 아님

2) 개별기준

가) 상품 상호 간의 유사 여부 판단은 [별표 2]에 의한다.

나) 서비스업 상호 간의 유사 여부 판단은 [별표 3]에 의한다.

다)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 여부는 상품의 동종성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서비스업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여부

- 서비스업과 상품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여부
- 서비스업의 제공장소와 상품의 판매장소가 일치하는가 여부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여부

라)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전환등록의 유사코드 부여는 [별표 4]에 의한다.

3) 유사 여부 판단의 특례

가) 2006. 12. 31 이전의 심사기준에 따라 “가지번호”를 사용한 서비스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사군 코드가 같지 않더라도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S1230, S1280, S1310은 가지번호로 분할되지 않은 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한 유사군 코드이므로 새로운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서비스업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종전의 유사군 코드		2007.1.1 이후의 유사군 코드	
코드번호	가지번호	코드번호	유사한 것으로 보는 범위
S1203		S1230	S1231, S1231B, S1232, S1233B, S1234 (서비스업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S1203-1	S1231	S1230, S1231B
	S1203-1B	S1231B	S1230, S1231, S1233B(비고 유사)
	S1203-2	S1232	S1230
	S1203-3B	S1233B	S1230, S1231B(비고 유사)
	S1203-4	S1234	S1230
	S1203-5	삭제	
S1208		S1280	S1281, S1282, S1283, S1284 (서비스업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S1208-1	S1281	S1280
	S1208-2	S1282	S1280
	S1208-3	S1283	S1280
	S1208-4	S1284	S1280
S1211		S1310	S1311, S1312 (서비스업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S1211-1	S1311	S1310
	S1211-2	S1312	S1310

나) 2006.12.31 이전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서비스업은 2007.1.1 이후 적용되는 유사군 코드가 같더라도 일률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사판단 비교대상”에 속하는 유사군 코드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서비스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종 전 의 코드번호	2007.1.1 이후의 유사군 코드		
	류별	코드번호	유사판단 비교대상
S1217		S1700	S1735, S1736, S1737, S1738, S1739, 1740, S1741, S1742, S1743, S1744, S1745 (서비스업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35	S1735	S1700
	36	S1736	S1700
	37	S1737	S1700
	38	S1738	S1700
	39	S1739	S1700
	40	S1740	S1700
	41	S1741	S1700
	42	S1742	S1700
	43	S1743	S1700
	44	S1744	S1700
	45	S1745	S1700

다) 다음에 예시된 서비스업은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류별	유사군	대상 서비스업(예시)	유사판단기준
35	S1311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도매, 소매, 판매대행, 판매알선, 상품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37	S0501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40	S1001	가공업	가공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41	S1209	(A군) 도서관경영업, 도서대출업, 독서실경영업, 이동도서관업	S1209에 속하는 다른 서비스업과 그 유사범위를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B군) 과학관경영업,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사적명소 관리경영업, 박물관개최관리업	S1209에 속하는 다른 서비스업과 그 유사범위를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C군) 개인교수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보 육원업, 유치원경영업, 유학알선 업, 종교교육업, 통신강좌업, 학 원경영업	S1209에 속하는 다른 서비스업과 그 유사범위를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학원경영업은 교육훈련의 목적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D군) 전람회개최관리업	전람회 개최 목적에 따라 그 유사범위를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E군)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S1209에 속하는 다른 서비스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상품분류전환등록에 따른 유사군 코드 부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류 구분 또는 유사군 코드, 유사판단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심사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마) 이 심사기준에 의한 유사판단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상표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목록(이하 “판례반영목록”이라 한다)은 상표디자인 심사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4. 적용범위

심사관은 이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상품 등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판례 반영목록”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5.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기호에 관한 범례

가. 이 심사기준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을 ‘용도+재료+방식+상품(서비스업)명칭’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예시 :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

나. 이 심사기준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의 뜻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예) 이식용 렌즈[義眼], 좌금[와셔]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접착테이프{문방구용 및 가정용은 제외}, 공기권총{장난감}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알루미나(Alumina), 미가공 면(綿)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예) 회화용/장식용/인쇄용/미술용 금속박 및 금속분

6. 시 행 일

가. 이 심사기준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은 2007.1.1. 이후 제출되는 출원서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 12. 31 이전에 제출된 출원서는 종전의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에 의한다.

나. 이 심사기준의 유사군 코드 및 유사판단기준은 2007. 1. 1 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Ⅲ. 유사군코드 개관

Ⅲ. 유사군코드 개관

1. 대분류

□ 상품

G01 비료

G02 농산물과 그 가공품, 식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G03 과자와 당류(糖類)

G04 조미료류

G05 차류(茶類)와 무주정 음료

G06 주류(酒類)

G07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油脂), 유(乳)제품, 동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G08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함)

G09 담배와 흡연기구

G10 화학품과 약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11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생용품

G12 향료,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화장품

G13 비누와 세제, 치약

G14 세탁 및 청소기구,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솔류

G15 염료, 안료, 도료

G16 광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17 유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18 주방용품과 일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19 벚짚, 풀짚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G20 목재, 죽재, 등(藤), 목피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21 종이,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종이제품

G22 문방구

G23 가죽과 그 모조품,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24 플라스틱, 고무, 펄프 및 기타 기초재료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G25 포대와 기타 용기(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26 가구, 침구, 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G27 신발, 우산, 지팡이, 부채와 그들의 부속품

- G28 난방기구, 냉방기구와 냉장기계기구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29 등류와 그 부속품(전기·전지용품은 제외)
- G30 못·볼트·너트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31 수동공구, 수동이기류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기구
- G32 금속과 그 반가공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 G33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 G34 이화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사진기계기구·영화기계기구·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 및 전기자기측정기는 제외)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사진재료 및 안경과 그 부속품
- G35 시계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G36 사무용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와 그 부품 및 부속품, 기타의 기계기구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 G37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38 산업기계기구·동력기계기구(전동기는 제외)·풍수력기구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기계요소
- G39 전기기계기구·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전기재료
- G40 연료, 공업용 유(공업용 유지는 제외), 납류
- G41 성냥
- G42 총포·총포탄·화약·폭약·화공품, 그들의 보조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G43 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 G44 보석·귀금속과 그들의 모조품, 그들을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45 피복, 액세서리용품, 조화(造花)
- G46 누에·누에고치 및 양잠기계기구
- G47 원료섬유
- G48 사(紗)류
- G49 직물류
- G50 망·끈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5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 G52 인쇄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서화, 조각, 사진 및 모형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 서비스업

S01 광고업

S02 금융업

S03 보험업

S04 토목·건축업

S05 수리·수선업

S06 통신업

S07 방송업

S08 운송업

S09 창고업

S10 특수가공업

S11 연예업

S12~S17 구한국분류 제101류 내지 제111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2. 대분류 및 중분류

□ 상품

G01 비료

〈 G0101 비료, 식물재배용 흙 〉

G02 농산물과 그 가공품, 식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 G0201 곡물·두류·분류 〉

〈 G0202 채소류 〉

〈 G0203 사탕무·사탕수수 〉

〈 G0204 가공채소 및 가공과실류 〉

〈 G0204B 채소주스 〉

〈 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

〈 G0206 가공곡물류 〉

〈 G0207 효모류 〉

- 〈 G0208 맥아 〉
- 〈 G0209 사료 〉
- 〈 G0210 종자·구근·버섯 균사 〉
- 〈 G0211 과실류 〉
- 〈 G0212 식물 〉
- 〈 G0213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G03 과자와 당류(糖類)

- 〈 G0301 과자와 빵 〉
- 〈 G0302 당류 〉
- 〈 G0303 떡 〉

G04 조미료류

- 〈 G0401 장류 〉
- 〈 G0402 화학조미료 〉
- 〈 G0403 식초류 〉
- 〈 G0404 향신료 〉
- 〈 G0405 식용 소금 〉
- 〈 G0406 홉(Hop) 〉

G05 차류(茶類)와 무주정 음료

- 〈 G0501 차류 〉
- 〈 G0502 커피 및 코코아류 〉
- 〈 G0503 청량음료, 과실음료, 차음료 〉
- 〈 G0503B 음료용 채소주스 〉
- 〈 G0504 광천수 〉
- 〈 G0505 얼음 〉

G06 주류(酒類)

- 〈 G0601 일반주류 〉
- 〈 G0602 양주·맥주 및 과실주 〉
- 〈 G0603 중국주·약미주 〉

G07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油脂), 유(乳)제품, 동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 〈 G0701 식육 〉
- 〈 G0702 난(卵) 〉
- 〈 G0703 내장품 〉
- 〈 G0704 유제품 〉
- 〈 G0704B 버터·버터크림 〉
- 〈 G0705 식용 및 공업용 유지 〉
- 〈 G0705B 마가린 〉
- 〈 G0706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
- 〈 G0707 벌레 〉

G08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함)

- 〈 G0801 어패류 〉
- 〈 G0802 해초류 〉
- 〈 G0803 어패류가공식품 〉

G09 담배와 흡연기구

- 〈 G0901 연초(담배) 〉
- 〈 G0902 흡연용구 〉

G10 화학품과 약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1001 무기공업약품·유기공업약품·계면활성제·화학제 〉
- 〈 G1002 접착제 〉
- 〈 G1003 인공감미료 〉
- 〈 G1004 약제 〉
- 〈 G1006 미생물 〉

G11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생용품

- 〈 G1101 의료기계기구 〉
- 〈 G1102 피임용구 〉
- 〈 G1103 기타 의료보조기 〉

G12 향료,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화장품

〈 G1201B 화장품 〉

〈 G1202 향료 〉

〈 G1204 화장용구 〉

G13 비누와 세제, 치약

〈 G1301 비누(인체용은 제외) 〉

〈 G1301B 인체용 비누·미용비누 〉

〈 G1302 치약·칫솔 〉

G14 세탁 및 청소기구,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솔류

〈 G140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 기계는 제외) 〉

G15 염료, 안료, 도료

〈 G1501 염료 〉

〈 G1502 안료 〉

〈 G1503 도자기용 유약 〉

〈 G1504 도료 〉

〈 G1505 구두약 〉

〈 G1506 광택제 〉

G16 광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1601 광석 〉

G17 유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1701 유리 〉

G18 주방용품과 일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1801 냄비류 〉

〈 G1802 식기 〉

〈 G1803 기타 주방용품 〉

〈 G1804 저장용품 〉

〈 G1805 가열기 〉

- 〈 G1806 싱크대 〉
- 〈 G1808 표찰류 〉
- 〈 G1809 기(旗)류 〉
- 〈 G1810 기념품류 〉
- 〈 G1811 부젓가락류 〉
- 〈 G1812 파리채류 〉
- 〈 G1813 휴대용 난로 〉
- 〈 G1814 텃류 〉
- 〈 G1815 화분류 〉
- 〈 G1816 어항류 〉
- 〈 G1817 애완동물용품 〉
- 〈 G1819 사다리 〉
- 〈 G1820 양복술 〉
- 〈 G1821 변기용품 〉
- 〈 G1822 저금통 〉
- 〈 G1823 전화기 회전대 〉
- 〈 G1824 재봉용품 〉
- 〈 G1825 욕실용품 〉

G19 벚짚, 풀잎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 〈 G1901 짚류 〉
- 〈 G1902 자리류 〉

G20 목재, 죽재, 등(藤), 목피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2001 목재류 〉
- 〈 G2002 목피류 〉
- 〈 G2003 톱밥류 〉

G21 종이,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종이제품

- 〈 G2101 종이류 〉
- 〈 G2102 화장지 및 휴지류 〉

G22 문방구

〈 G2201 인쇄잉크 〉

〈 G2202 문방구류 〉

G23 가죽과 그 모조품,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2301 가죽 〉

〈 G2302 인조가죽 〉

G24 플라스틱, 고무, 펄프 및 기타 기초재료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 G2401 플라스틱 〉

〈 G2402 고무 〉

〈 G2403 펄프 〉

〈 G2404 동물각질류 〉

G25 포대와 기타 용기(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2501 가방 및 대물류 〉

〈 G2502 통류 〉

〈 G2503 상자 〉

〈 G2504 포대 및 포장재 〉

〈 G2505 가마니 〉

〈 G2506 마개류 〉

〈 G2507 병류 〉

G26 가구, 침구, 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2601 가구류 〉

〈 G2602 옥내장치용품 〉

〈 G2603 화병류 〉

〈 G2604 액자류 〉

〈 G2605 옥외장식품 〉

〈 G2606 침구류 〉

〈 G2607 혼상제구 〉

G27 신발, 우산, 지팡이, 부채와 그들의 부속품

- 〈 G2701 신발류 〉
- 〈 G2702 구두용품 〉
- 〈 G2703 우산류 〉
- 〈 G2704 지팡이 〉
- 〈 G2705 부채 〉

G28 난방기구, 냉방기구와 냉장기계기구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2801 난방기류 〉
- 〈 G2801B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 〉
- 〈 G2802 냉동기계기구 〉
- 〈 G2803 환기용 기계기구 〉

G29 등류와 그 부속품(전기·전지용품은 제외)

- 〈 G2901 등류 〉
- 〈 G2902 촛대류 〉

G30 못·볼트·너트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3001 못·볼트·너트류 〉
- 〈 G3002 자물쇠류 〉

G31 수동공구, 수동이기류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기구

- 〈 G3101 수동이기류 〉
- 〈 G3102 침(針)류 〉
- 〈 G3103 수동공구류 〉
- 〈 G3104 브러시류 〉
- 〈 G3105 연마용 기구류 〉
- 〈 G3106 목수용품류 〉
- 〈 G3107 비전기식 이·미용기류 〉

G32 금속과 그 반가공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 〈 G3201 철 및 강류 〉

〈 G3202 비철금속류 〉

〈 G3203 용접봉 〉

G33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 G3301 시멘트 〉

〈 G3302 석재류 〉

〈 G3303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

〈 G3304 타일류 〉

〈 G3305 기타 건축재 〉

〈 G3306 침목류 〉

G34 이화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사진기계기구·영화기계기구·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 및 전기자기측정기는 제외)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사진재료 및 안경과 그 부속품

〈 G3401 이화학기계기구 〉

〈 G3402 광학기계기구(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영화기계기구 〉

〈 G3402B 사진기계기구 〉

〈 G3403 측정기계기구 〉

〈 G3404B 사진재료 〉

〈 G3405 안경 〉

G35 시계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G3501 시계와 그 부품 〉

G36 사무용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와 그 부품 및 부속품, 기타의 기계기구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 G3601 사무용 기계기구 〉

〈 G3602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

〈 G3603 주유기기 〉

〈 G3604 이·미용 의자 〉

〈 G3605 구멍용구 〉

- 〈 G3606 소화기류 〉
- 〈 G3607 경보기기 〉
- 〈 G3608 교통신호기 〉
- 〈 G3609 잠수용 기기 〉
- 〈 G3610 악기 조율기 〉
- 〈 G3611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기 〉
- 〈 G3612 잔디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
- 〈 G3613 전동식 문자동개폐장치 〉

G37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3701 운반기계기구 〉
- 〈 G3702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
- 〈 G37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 〈 G37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
- 〈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 〈 G3706 자전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 〈 G3707 기타 수송기계기구 〉
- 〈 G3708 타이어 및 튜브 〉
- 〈 G3711B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기 〉
- 〈 G3712B 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 〉

G38 산업기계기구·동력기계기구(전동기는 제외)·풍수력기구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
(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기계요소

- 〈 G3801 금속가공기계기구 〉
- 〈 G3802 광산기계기구 〉
- 〈 G3803 토목·건축 기계기구 〉
- 〈 G3804 농·축산용 기계기구 〉
- 〈 G3806 착유기기 〉
- 〈 G3807 양봉용구 〉
- 〈 G3808 부란기 〉
- 〈 G3809 어업용 기계기구 〉
- 〈 G3810 화학기계기구 〉

- 〈 G3811 섬유기계기구 〉
- 〈 G3812 식료·음료가공기계기구 〉
- 〈 G3813 제재·목공기계기구 〉
- 〈 G3814 펄프·제지기계기구 〉
- 〈 G3815 인쇄·제본기계기구 〉
- 〈 G3816 공업용 노(爐) 〉
- 〈 G3817 봉제기계 〉
- 〈 G3818 가죽가공기계 〉
- 〈 G3819 담배가공기계 〉
- 〈 G3820 유리가공기계 〉
- 〈 G3821 도장기계 〉
- 〈 G3822 포장기계 〉
- 〈 G3823 동력기계기구(증기보일러는 제외) 〉
- 〈 G3823A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
- 〈 G3824 풍·수력기계기구 〉
- 〈 G3825 동력전도장치 〉
- 〈 G3826B 비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기 〉
- 〈 G3827B 비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 〉
- 〈 G3828 기타 기계요소 및 밸브류 〉
- 〈 G3829 수차·풍차 〉
- 〈 G3830 세척기계 〉
- 〈 G3831 주차기계 〉
- 〈 G3832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 〉

G39 전기기계기구·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전기재료

- 〈 G3901 회전전기기계·배전용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모터류 〉
- 〈 G3902 전구류 및 조명기구 〉
- 〈 G3903 전기에너지·전지 〉
- 〈 G3904 전기자기측정기 〉
- 〈 G3905B 전선 및 케이블 〉
- 〈 G3906B 민생용 전기기계기구 〉

〈 G3907A 라디오수신기 · 시계라디오 ·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 텔레비전수신기 ·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 · 음성주파기기 〉

〈 G3907B 전기통신기계기구 〉

〈 G3908 전자응용기계기구 〉

〈 G3908B 반도체소자 〉

〈 G3909 전기재료 〉

〈 G3909B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 절연테이프 〉

G40 연료, 공업용 유(공업용 유지는 제외), 납류

〈 G4001 고체연료 〉

〈 G4002 기체연료 〉

〈 G4002B 액체연료 〉

〈 G4003B 공업용 油 〉

〈 G4004 납류 〉

〈 G4006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유압회로용액 〉

G41 성냥

〈 G4101 성냥 〉

〈 G4102 라이터 〉

G42 총포 · 총포탄 · 화약 · 폭약 · 화공품, 그들의 보조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G4201 총포류 〉

〈 G4202 총포탄 · 화약 및 화공품과 그 보조기구 〉

G43 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 G4301 완구 및 인형 〉

〈 G4302 오락용구 〉

〈 G4303 운동구류 〉

〈 G4304 낚시용구 〉

〈 G4305 승마용구 〉

G44 보석·귀금속과 그들의 모조품, 그들을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4401B 보석 및 그 모조품 〉

〈 G4402 귀금속류 〉

G45 피복, 액세서리용품, 조화(造花)

〈 G4501 겹옷, 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

〈 G4502 한복 〉

〈 G4503 속옷·스웨터·셔츠 〉

〈 G4504 기타 피복류 〉

〈 G4505 모자류 〉

〈 G4506 마스크류 〉

〈 G4507 방화피복류 〉

〈 G4508 혁대류 〉

〈 G4509A 장신용품 〉

〈 G4510B 단추류 〉

〈 G4511 포제(布制) 신변품 〉

〈 G4512 조화(造花) 〉

G46 누에·누에고치 및 양잠기계기구

〈 G4601 잠종과 누에고치 〉

〈 G4602 양잠기계 〉

G47 원료섬유

〈 G4701 미가공 면섬유 〉

〈 G4702 미가공 견섬유 〉

〈 G4703 미가공 마섬유 〉

〈 G4704 미가공 모섬유 〉

〈 G4705 화학섬유 〉

〈 G4706 무기섬유 〉

G48 사(紗)류

〈 G4801 사(絲)류 〉

G49 식물류

- 〈 G4901 식물 〉
- 〈 G4902 편물 〉
- 〈 G4903 세폭직물 〉
- 〈 G4904 부직포 및 펠트 〉

G50 망·끈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5001 끈류 〉
- 〈 G5002 망류 〉

G5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 〈 G510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

G52 인쇄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서화, 조각, 사진 및 모형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 G5201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
- 〈 G5202 서화 〉
- 〈 G5203 조각류 〉
- 〈 G5204 사진류 〉
- 〈 G5205 모형물 및 모형제작용 재료 〉
- 〈 G5206 서적·정기간행물류 〉

G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 서비스업

S01 광고업

- 〈 S0101 광고업 〉

S02 금융업

- 〈 S0201 금융업 〉

S03 보험업

〈 S0301 보험업 〉

S04 토목·건축업

〈 S0401 토목·건축업 〉

S05 수리·수선업

〈 S0501 수리·수선업 〉

S06 통신업

〈 S0601 통신업 〉

S07 방송업

〈 S0701 방송업 〉

S08 운송업

〈 S0801 운송업 〉

S09 창고업

〈 S0901 창고업 〉

S10 특수가공업

〈 S1001 특수가공업 〉

S11 연예업

〈 S1101 연예업 〉

S12~S17 구한국분류 제101류 내지 제111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 S1201 농업·임업·축산·어업·광업관련서비스업 〉

〈 S1202 인쇄·출판관련서비스업 〉

〈 S1204 법무·세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 〉

〈 S1205 의료·보건서비스업 〉

- 〈 S1206 요식·주점·유흥업 〉
- 〈 S1207 숙박업 〉
- 〈 S1209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
- 〈 S1210 스포츠·오락서비스업 〉
- 〈 S1212 부동산 등 관리·임대·감정관련서비스업 〉
- 〈 S1213 설계 및 디자인관련서비스업 〉
- 〈 S1214 의상서비스업 〉
- 〈 S1215 여행·관광서비스업 〉
- 〈 S1216 사진서비스업 〉
- 〈 S1230~S1234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
- 〈 S1280~S1284 환경·위생서비스업 〉
- 〈 S1310~S1312 도소매·판매대행·판매알선·중개관련서비스업 〉
- 〈 S1370 사무처리업 〉

- 〈 S17 따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

IV. 상품 유사군코드 해설

IV. 상품 유사군코드 해설

「비고」란의 *표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상품군 및 서비스업군을 표시함.

G01 비료

〈 G0101 비료, 식물재배용 흙 〉

- 화학비료 :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공업적으로 생산된 비료
- 천연비료 : 천연으로 얻을 수 있는 비료
- 복합비료 :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비료를 혼합한 비료
-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 광물제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플라스틱제 식물생육용 인공토양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101	1	비료, 식물재배용 흙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쌀겨사료”(31류) : G0209
- “식물성장조절제”, “식물육성제”, “토질개량제”(1류) : G1004
- “톱밥”(22류) : G2003

G02 농산물과 그 가공품, 식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1	1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29	냉동한 두류		
	30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 식용 전분		
	3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G0202	29	냉동한 채소		
	31	신선한 채소		
G0203	31	사탕무, 사탕수수		*

G0204	29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 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30	아몬드 페이스트, 케이퍼		*
	31	코프라		*
G0204B	29	요리용 채소주스	G0503B	*
G0205	29	두부, 두부가공식품		
G0206	29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30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G0207	30	메주, 효모		
G0208	30	식용 맥아		
	31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G0209	31	사료		
G0210	31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G0211	29	냉동한 과실		
	31	신선한 과실		
G0212	31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G0213	5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G0201 곡물 · 두류 · 분류 〉

- 곡물(穀物) : 양식이 되는 쌀 · 보리 · 조 따위를 통틀어 일컬음.
- 두류(豆類) : 콩 종류의 곡식임.
- 분류(粉類) : 원칙적으로 穀物 및 豆類에 속하는 것을 가루로 만든 것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1	1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29	냉동한 두류		
	30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 식용 전분		
	3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보존처리한 두류”(29류) : G0206
- “곡분제 식품”,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30류) : G0206
- “겨자가루”, “냉이가루”(30류) : G0404

〈 G0202 채소류 〉

부식물로 쓰는 온갖 푸성귀로서, 냉동채소류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2	29	냉동한 채소		
	31	신선한 채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29류) : G0204
- “요리용 채소주스”(29류) : G0204B
- “채소 또는 과일 가공음료”(32류) : G0503
-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32류) : G0503B
- “약쥬”(5류) : G1004

〈 G0203 사탕무·사탕수수 〉

설탕의 원료를 수확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인 당료작물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3	31	사탕무, 사탕수수		*

〈 G0204 가공채소 및 가공과실류 〉

천연채소나 과실에 가공을 한 것으로서, 건조 또는 조리된 채소 및 과실이 해당됨. 단, 가공하지 않고 단지 냉동한 채소와 냉동한 과실은 제외됨.

〈 G0204B 채소주스 〉

토마토 주스(G0503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4	29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일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일(냉동한 과실은 제외)		
	30	아몬드 페이스트, 케이퍼		*
	31	코프라		*
G0204B	29	요리용 채소주스	G0503B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냉동한 채소”(29류), “신선한 채소”(31류) : G0202
- “냉동한 과일”(29류), “신선한 과일”(31류) : G0211
- “양념용 수프”(30류) : G0404
- “차의 잎”(30류) : G0501

〈 G0205 두부, 두부가공식품 〉

콩으로 만든 음식의 일종인 두부와 유사한 것들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5	29	두부, 두부가공식품		

〈 G0206 가공곡물류 〉

식품의 원료인 곡물을 주재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6	29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30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곡분”(1류), “식용 곡분”(30류) : G0201
- “도정한 곡물”(30류),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31류) : G0201
- “두부”, “두부가공식품”(29류) : G0205

〈 G0207 효모류 〉

식품의 발효작용(효모·세균·곰팡이 등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 또는 산화·환원하여 알콜이나 탄산가스 등으로 변하는 작용)이나 발효제로 쓰이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7	30	메주, 효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효소”(1류) : G1001
- “의료용 효소”, “수의과용 효소”(5류) : G1004
- “비의료용 미생물”(1류), “의료용 미생물”(5류) : G1006

〈 G0208 맥아 〉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내어서 말린 것으로서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8	30	식용 맥아		
	31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효모”(30류) : G0207
- “맥주용 맥아즙”(32류) : G0602
- “약제용 맥아”(5류) : G1004

〈 G0209 사료 〉

동물 등의 사육에 필요한 먹이가 해당되나, 의료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09	31	사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쌀겨깻묵비료[미강유박비료]”(1류) : G0101
- “의료용 사료첨가제”(5류) : G1004
- “닭시용 떡밥”(31류) : G4304

〈 G0210 종자·구근·버섯 균사 〉

농업, 원예 또는 채유(採油)를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 및 구근이 주로 해당되나, 식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10	31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묘목”(31류) : G0212

〈 G0211 과실류 〉

먹을 수 있는 과실로서, 냉동과실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11	29	냉동한 과실		
	31	신선한 과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29류) : G0204

-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32류) : G0503

〈 G0212 식물 〉

대부분 땅속에 몸의 일부를 붙박아서 이동하지 않으며, 뿌리·줄기·잎을 갖추어 수분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광합성 등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살아있는 식물 등이 해당됨. 단, 채소류 및 과실류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12	31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신선한 채소”(31류) : G0202

- “신선한 과실”(31류) : G0211

- “인조잔디”(27류) : G3303

- “생화화환”(31류) : G4512

〈 G0213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이유식 등 유아용 식품 등이 해당되나, 분유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213	5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분유(유아용은 제외)”(31류) : G0704

G03 과자와 당류(糖類)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301	30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G0302	5	유당(乳糖)		
	30	식용 당(糖)류		
G0303	30	떡류		

〈 G0301 과자와 빵 〉

밀가루·쌀가루·설탕·우유·버터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간식용 식품인 과자와, 곡식가루를 반죽하여 불에 익힌 식품인 빵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301	30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만두”, “빈대떡”, “토스트”, “피자”(30류) : G0206
- “물엿”, “분말물엿”(30류) : G0302
- “떡”(30류) : G0303
- “햄버거용 고기”(29류) : G0703
- “약용 캔디”, “의료용 과자”(5류) : G1004

〈 G0302 당류 〉

액체에 녹으면 단맛이 있는 탄수화물이 해당되나, 인공감미료 및 의료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302	5	유당(乳糖)		
	30	식용 당(糖)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인공감미료”(1류) : G1003
- “의료용 로얄젤리”, “의료용 설탕”, “의료용 포도당”(5류) : G1004

〈 G0303 떡 〉

곡식가루를 반죽하여 찌서 만든 음식으로서, 흰떡·시루떡·송편·인절미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303	30	떡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빈대떡”(30류) : G0206
- “호떡”(30류) : G0301

G04 조미료류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1	30	장(醬)류		
G0402	30	화학조미료		
G0403	30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G0404	3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30	향신료		
G0405	30	식용 소금		
G0406	31	홉(Hop)		
	32	맥주제조용 홉 엑기스		

〈 G0401 장류 〉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1	30	장(醬)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메주”(30류) : G0207

〈 G0402 화학조미료 〉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이는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조미료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2	30	화학조미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향신료”(30류) : G0404

〈 G0403 식초류 〉

식초를 포함한 각종 소스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3	30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양념용 수프”(30류) : G0404

〈 G0404 향신료 〉

음식물에 매운 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4	3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30	향신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채소수프”(29류) : G0204
- “맛소금”(30류) : G0405
- “향료”(3류) : G1202

〈 G0405 식용 소금 〉

요리용(조리용) 또는 식품보존용 소금을 일컫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5	30	식용 소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염류”(1류) : G1001

〈 G0406 홉(Hop) 〉

삼과의 다년생 만초인 홉이나, 맥주제조용 홉엑기스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406	31	홉(Hop)		
	32	맥주제조용 홉 엑기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양조 및 증류용 맥아”(31류) : G0208
- “맥주용 맥아즙”(32류) : G0602

G05 차류(茶類)와 무주정 음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1	30	차(茶)류		
G0502	30	커피, 코코아		
	31	미가공 코코아 원두		

G0503	30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
	32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일 가공 음료		
G0503B	32	음료용 채소주스	G0204B	*
G0504	32	광천수, 생수		
G0505	30	얼음		

〈 G0501 차류 〉

차의 재료인 건조된 차의 잎이나, 그것을 달인 물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1	30	차(茶)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 음료”(30류) : G0503

〈 G0502 커피 및 코코아류 〉

커피 및 코코아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2	30	커피, 코코아		
	31	미가공 코코아 원두		

〈 G0503 청량음료, 과실음료, 차음료 〉

맛이 산뜻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로서 소다수·사이다 등의 청량음료, 과실에서 짜낸 즙으로 만든 과실음료, 차음료 등이 해당됨.

〈 G0503B 음료용 채소주스 〉

음료용 채소주스는 요리용 채소주스(G0204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3	30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
	32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일 가공 음료		
G0503B	32	음료용 채소주스	G0204B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차(茶)류”(30류) : G0501
- “밀크커피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30류) : G0502

〈 G0504 광천수 〉

음료용으로 사용되는 생수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4	32	광천수, 생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탄산수(음료)”(32류) : G0503
-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온천수”(5류) : G1004

〈 G0505 얼음 〉

생수 등을 얼려서 제조된 얼음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505	30	얼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드라이아이스”(1류) : G1001

G06 주류(酒類)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601	33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G0602	32	맥주, 맥주용 맥아 즙		
	33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G0603	33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 G0601 일반주류 〉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등 일반주류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601	33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 G0602 양주·맥주 및 과일주 〉

서양의 양조법에 따라 빛은 술인 양주, 보리의 엿기름 즙에 홉을 섞어 향기와 쓴맛이 나게 한 뒤에 효모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술인 맥주, 과일즙을 발효시켜 만들거나 소주 따위에 과실을 담가 우려서 만든 술인 과일주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602	32	맥주, 맥주용 맥아 즙		
	33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 G0603 중국주·약미주 〉

고량주, 노주 등의 중국주, 한약재 등의 재료를 알콜에 가미하거나 우리나라에게 하여 독특한 맛을 내거나 인체에 좋은 술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603	33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G07 축산물과 그 가공품, 유지(油脂), 유(乳)제품, 동물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1	29	식육		
G0702	29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31	부화용 수정란		
G0703	18	소시지제조용 창자		
	29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G0704	5	유아용 분유		
	29	우유, 유(乳)가공식품		
G0704B	29	버터, 버터크림	G0705B	*
G0705	4	공업용 유지(油脂)		
	29	식용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G0705B	29	마가린	G0704B	*
G0706	31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G0707	29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31	살아있는 벌레		

〈 G0701 식육 〉

식용으로 하는 고기로서, 냉동고기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1	29	식육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29류) : G0703

〈 G0702 난(卵) 〉

식용란(卵), 난(卵) 가공식품 및 부화용 수정란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2	29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31	부화용 수정란		

〈 G0703 내장품 〉

가공한 식육(食肉),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3	18	소시지제조용 창자		
	29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식육”(29류) : G0701
- “어패류가공식품”(29류) : G0803

〈 G0704 유제품 〉

우유, 유(乳) 가공식품 등이 해당됨.

〈 G0704B 버터·버터크림 〉

天然의 버터가 해당되며, 마가린(G0705B)과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4	5	유아용 분유		
	29	우유, 유(乳)가공식품		
G0704B	29	버터, 버터크림	G0705B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두유”(29류) : G0205
-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30류) : G0502
- “땅콩즙음료”, “유장음료”, “아몬드즙음료”(32류) : G0503

〈 G0705 식용 및 공업용 유지 〉

유지(油脂)란 동식물에서 얻는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서, 공업용 및 식용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및 가공유지가 모두 해당됨.

〈 G0705B 마가린 〉

버터, 버터크림(G0704B)과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5	4	공업용 유지(油脂)		
	29	식용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G0705B	29	마가린	G0704B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유(油)”(4류) : G4003B

〈 G0706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

애완용, 관상용, 사역용(使役用), 사육용, 종축용, 산란용 동물·가축·가금 중에서 살아있는 것에 한해서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6	31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 G0707 벌레 〉

작은 동물인 굼벡이·지렁이 등이 해당되며, 벌레가공식품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707	29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31	살아있는 벌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거머리”(5류) : G1004

-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31류) : G4304

- “누에”(31류) : G4601

G08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801	29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31	살아있는 어패류		
G0802	22	충전용 해초		
	29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31	신선한 해초		
G0803	29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 G0801 어패류 〉

식용의 어류 및 조개류로서, 냉동된 것 및 소금에 절인 것도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801	29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31	살아있는 어패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29류) : G0803

〈 G0802 해초류 〉

미가공의 신선한 해초류와, 해초가공식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802	22	충전용 해초		
	29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31	신선한 해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해산(海産)비료”(1류) : G0101

〈 G0803 어패류가공식품 〉

보존처리한 어패류 및 어패류가공식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803	29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29류), “살아있는 어패류”(31류) : G0801

G09 담배와 흡연기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901	34	담배(의료용은 제외)		
G0902	16	시가용 밴드		*
	34	흡연용구		

〈 G0901 연초(담배) 〉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인 잎담배, 권연 등이 해당되나, 의료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901	34	담배{의료용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연초”(5류) : G1004

〈 G0902 흡연용구 〉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된 흡연용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0902	16	시가용 밴드		*
	34	흡연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9류) : G3705
- “성냥”(34류) : G4101
- “흡연용 라이터”(34류) : G4102

G10 화학품과 약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1	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2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3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표백제, 탈색제		
	4	먼지억지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19	타르(Tar), 피치(Pitch)		
	30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G1002	1	공업용 접착제		
	3	세탁용 풀		
	16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17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전기절연용은 제외)		
G1003	1	인공감미료		
G1004	1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5	약제		
G1006	1	비(非)의료용 미생물		
	5	의료용 미생물		

〈 G1001 무기공업약품 · 유기공업약품 · 계면활성제 · 화학제 〉

○ 무기공업약품 :

무기화학(모든 원소와 탄소이외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과 일부의 탄소화물로 이루어진 화합물 및 일부의 탄소화합물)의 기초 제품으로 공업원료 또는 실험용으로 취급되는 것과, 아직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취급되는 것도 포함됨.

○ 유기공업약품 :

공업원료 또는 실험용으로서 사용되는 유기화학(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의 기초 제품이며, 단백질의 원재료도 포함됨.

○ 계면활성제 :

물 또는 기름에 용해되어 계면(界面)에너지를 현저히 낮추고, 계면에 있어서 여러 성질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에 사용되는 것을 일컬음. 물질 그 자체로서는 공업약품에 속할지라도 계면활성제로서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며,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작용은 세정작용임.

○ 화학제 :

무기 및 유기공업약품에 속하는 그 자체가 단독으로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무기 및 유기공업약품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을 혼합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1	1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2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3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표백제, 탈색제		
	4	먼지억지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19	타르(Tar), 피치(Pitch)		
	30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베이킹파우더”(30류) : G0207
- “토질개량제”(1류), “공기정화제”, “살균제”, “약제용 몰식자산”, “의료용 동위원소”, “수의과 용 효소”(5류) : G1004
- “가정용 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정제”(3류) : G1301
- “매염염료”(2류) : G1501
- “미가공 인조수지”(1류) : G2401
- “석면제 모르타르”, “석유피치[아스팔트]”(19류) : G3303
- “공업용 윤활유”(4류) : G4003B

〈 G1002 접착제 〉

두 물체를 접착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2	1	공업용 접착제		
	3	세탁용 풀		
	16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테이프		
	17	접착테이프(문방구용/의료용/가정용/전기절연용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접착테이프”, “의치용 접착제”(5류) : G1103
- “가발고정용 접착제”, “인조속눈썹고정용 접착제”(3류) : G1204
- “문방구용 접착제”(16류) : G2202

〈 G1003 인공감미료 〉

화학품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인공감미료가 해당되나, 천연감미료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3	1	인공감미료		

〈 G1004 약제 〉

의료용으로 제조된 약으로서, 특히 농업용 약제(살충제, 제초제)등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4	1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5	약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약용주”(33류) : G0603
- “노화방지제”(1류) : G1001
- “화장용 발한방지제”, “화장용 발한억제제”(3류) : G1201B
- “약용 비누(비의료용)”(3류) : G1301B
- “의치광택제”, “의치청결제”(3류) : G1302

〈 G1006 미생물 〉

의료용 및 비의료용 미생물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006	1	비(非)의료용 미생물		
	5	의료용 미생물		

G11 의료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생용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101	5	두통용 연필,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반지		
	9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10	의료기계기구		
	11	치과용 오븐(Dental oven)		
	12	혈체어		

G1102	10	피임용구		
G1103	5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의료용 기저귀,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치과용 연마재, 치과용 충전재		
	10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 주머니, 의료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1	일회용 살균봉투		
	21	치과용 플로스(Dental floss)		

〈 G1101 의료기계기구 〉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단용·수술용·치료용·병원용·치과용·수의과용·의료용 보조기구 및 교정(지지기구·의료용 X-선장치 및 부항기 등)에 쓰이는 기계기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101	5	두통용 연필,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반지		
	9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10	의료기계기구		
	11	치과용 오븐(Dental oven)		
	12	혈체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앰블런스”(12류) : G3705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0류) : G3906B

〈 G1102 피임용구 〉

인위적으로 임신을 피하는 기구로서 콘돔, 페서리, 피임용 색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102	10	피임용구		

〈 G1103 기타 의료보조기 〉

치료의 재료 또는 보조재료, 그리고 위생용품이 해당함.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위생용품과 모유용구, 의료재료(예: 인공고막용 재료, 인공치과용 재료 등)중 의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의료 관련 상품 중 약제를 제외한 것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103	5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의료용 기저귀,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치과용 연마재, 치과용 충전재		
	10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 주머니, 의료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1	일회용 살균봉투		
	21	치과용 플로스(Dental floss)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류마티즘방지방지”(5류), “의치용 핀”, “복대”, “치과용 거울”(10류) : G1101
- “화장용 탈지면”(3류) : G1204
- “의료용 장갑”(10류) : G4504
- “마취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10류) : G4506

G12 향료,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화장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201B	3	화장품	G1301B	
G1202	3	향료		
G1204	3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8	매니큐어(Manicure) 세트, 페디큐어(Pedicure) 세트		
	18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
	21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비누갑		
	24	화장제거용 직물제 냅킨		*
	26	가발, 장식용 수염, 비전기식 헤어컬(Curl)기(수동기구는 제외)		

〈 G1201B 화장품 〉

분(粉)이나 크림 등 화장에 쓰이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여 매력을 더하게 하는 데 쓰이며, 또한 피부와 모발을 튼튼히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됨. 여기에는 여성용, 남성용, 유아용 그리고 두발용의 것도 모두 포함됨.

화장품은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G1301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201B	3	화장품	G1301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인체용 방취제", "공기정화제"(5류) : G1004
- "가정용 방향제", "향료"(3류) : G1202

〈 G1202 향료 〉

향을 만드는 것으로서 식물성 및 동물성 천연향료, 합성향료, 조합향료 등이 해당되나, 식품 향료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202	3	향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식품향미용 정유"(3류) : G0404
- "인체용 방향제[향수]"(3류) : G1201B

〈 G1204 화장용구 〉

화장에 필요한 기초도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204	3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먼봉, 화장용 탈지면		
	8	매니큐어(Manicure) 세트, 페디큐어(Pedicure) 세트		
	18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

21	화장용 솔, 향수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비누갑		
24	화장제거용 직물제 냅킨		*
26	가발, 장식용 수염, 비전기식 헤어컬(Curl)기{수동기구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제거용 종이티슈”(16류) : G2102
- “화장품용 병”(21류) : G2507
- “속눈썹인두”, “손톱다듬줄”(8류) : G3107
-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21류) : G3804
-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전기식 화장제거기구”(9류) : G3906B
- “전기식 머리빗”(21류) : G3906B

G13 비누와 세제, 치약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301	3	비누(인체용은 제외)		
G1301B	3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G1201B	
G1302	3	치약		
	21	칫솔		

〈 G1301 비누{인체용은 제외} 〉

세정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제품으로서, 통상 비누 또는 세제 (가정용 석유계 세제, 가정용 고급알콜계 세제 등)가 해당되나, 인체용은 제외

〈 G1301B 인체용 비누·미용비누 〉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는 화장품(G1201B)과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301	3	비누(인체용은 제외)		
G1301B	3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G1201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제조공정용 세정제”, “청관제”(1류), “세탁용 섬유유연제”(3류) : G1001
- “의료용 세정제”(5류) : G1004

〈 G1302 치약·칫솔 〉

치아를 청결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제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302	3	치약		
	21	칫솔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구강소독제”, “의료용 구강청량제”(5류) : G1004
- “전기칫솔”(21류) : G3906B

G14 세탁 및 청소기구,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슬류

〈 G140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 기계는 제외} 〉

때 묻은 옷이나 피륙 등을 물에 빠는 데 쓰이는 세탁용구, 깨끗이 쓸고 닦거나 더러운 것을 없애어 깨끗이 하는 데 쓰이는 청소용구가 해당되나, 전기식 기계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401	6	금속제 빗자루 손잡이		*
	16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20	비금속제 빗자루 손잡이, 우산꽃이통		*
	21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행주”(24류) : G1803
- “전기진공청소기”(7류) : G3906B

G15 염료, 안료, 도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1	2	염료		
G1502	2	안료		
G1503	1	도자기용 유약		
G1504	2	도료		
G1505	3	구두약		
	4	구두용 그리스		
G1506	3	광택제		
	4	가죽보존용 오일		

〈 G1501 염료 〉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 착색(着色)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물과 기름 그리고 알콜에 용해되는 것으로서, 천연 또는 합성염료 모두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1	2	염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용 매염제”(1류),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2류) : G1001

〈 G1502 안료 〉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물과 기름 그리고 알콜 등에 용해되지 않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2	2	안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인쇄잉크”(2류) : G2201
- “금박”, “은박”, “백금박”(14류) : G4402

〈 G1503 도자기용 유약 〉

도자기의 몸에 덧씌우는 유약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3	1	도자기용 유약		

〈 G1504 도료 〉

물체 표면에 칠하여 썩지 않게 하거나 채색에 쓰이는 유동성(流動性)의 물질로서, 니스·페인트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4	2	도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절연도료”(17류) : G3909

〈 G1505 구두약 〉

구두의 가죽이 오래 견디고 윤이 나게 하려고 바르는 것으로서, 색을 칠하는 것만이 아니고 光을 낼 목적의 것도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5	3	구두약		
	4	구두용 그리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둣솔”, “비전기식 구두닦는 기구”(21류) : G2702

- “전기식 구두닦는 기계”(7류) : G3906B

〈 G1506 광택제 〉

어떤 물체의 표면에 광을 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해당되나, 구두전용의 것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506	3	광택제		
	4	가죽보존용 오일		

G16 광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1601 광석 〉

비금속광물, 미가공의 금강사·코런덤, 지금(地金)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가 포함된 금속광석, 미가공의 천연원석, 미가공의 운모(雲母), 미가공의 건축용 또는 건축용 비금속광물, 미가공의 해포석·호박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601	1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6	금속광석		
	14	보석의 원석		
	17	운모(雲母)		
	19	건축 또는 건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20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연마용 모래”(3류) : G3105
- “가돌리늄”, “루비듐”, “실리콘”, “수은”(1류) : G3202
- “석재”, “인조석재”(19류) : G3302
- “보석”, “인조보석”(14류) : G4401B
- “전기절연용 운모제품”(17류) : G3909

G17 유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 G1701 유리 〉

렌즈용 유리 등 가공유리, 건축용 유리 및 유리제 기초제품(不定形の 것 및 棒·管·板 등), 비건축용 유리 및 유리제 기초제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701	9	비(非)건축용 가공유리		
	19	건축용 유리		
	21	비건축용 유리기초제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내열도기냄비[유리냄비]”(21류) : G1801
- “오팔유리잔”, “유리사발”, “유리접시”, “유리컵”(21류) : G1802
- “광학렌즈”(9류) : G3402
- “자동차용 앞유리”(12류) : G3705

G18 주방용품과 일용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1	6	금속제 냄비고리		*
	21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26	찰주전자용 보온 커버		*
G1802	21	식기		
G1803	6	금속제 바구니		*
	8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포크		
	11	가스그릴(Gas grill),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 요리용 번철		
	16	은박지, 주방용 호일		
	20	비금속제 바구니, 음료용 빨대		
	21	가정용 식음료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24	행주		
G1804	11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21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G1805	11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G1806	11	싱크대		
G1808	6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11	발광성 가옥번호판		*
	16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비직물제 라벨		
	19	비금속제 광고기둥		*
	20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21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24	직물제 라벨		
	26	경기용 번호표		*
G1809	16	종이제 기(旗)		
	20	깃대, 깃봉		
	24	비종이제 기(旗)		
G1810	6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14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2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G1811	8	부삽, 부젓가락		
	21	가정용 석탄통		*
G1812	5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21	파리채, 포충기		
	28	곤충채집용 채		
G1813	11	휴대용 난로		
G1814	6	금속제 야생동물용 덫		*
	21	쥐덫		
	22	그물형 덫		
G1815	16	종이제 화분커버		*
	17	꽃꽂이용 폼서포트		*
	20	초목용 지지목(支持木)		
	21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륨(Terrarium), 화분용 물뿌리개		

G1816	7	수족관용 공기펌프		
	11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19	구조물로 된 수족관		
	21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G1817	1	새잡이 끈끈이		*
	6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18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19	돼지우리, 마구간, 비금속제 닭장		
	20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21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28	애완동물용 장난감		
	31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		
G1819	6	금속제 사다리		
	20	비금속제 사다리		
	22	줄 사다리		
G1820	21	양복솔		*
G1821	11	변기, 비데(Bidet)		
	16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
	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24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
G1822	6	금속제 저금통		
	21	비금속제 저금통		
G1823	21	전화기 회전대		*
G1824	8	비전기식 다리미, 비전기식 인두		
	11	가열다리미용 히터		*
	16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20	수틀, 목제 실패		
	21	다림질대		

	24	자수용 도안직물		
	26	바늘꽃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G1825	11	욕조, 샤워기		
	21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24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27	욕실용 매트		

〈 G1801 냄비류 〉

음식을 끓이는 데 쓰이는 비전기식의 작은 기구들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1	6	금속제 냄비고리		*
	21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26	찰주전자용 보온 커버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식 주전자”, “전기식 프라이팬”(11류) : G3906B

〈 G1802 식기 〉

음식을 담는 그릇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2	21	식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술가락”, “포크”(8류), “밥상”, “젓가락”(21류) : G1803
- “물통”, “보온통”, “얼음통”(21류) : G1804
- “애완동물용 식기”(21류) : G1817

- “식료용 병”, “음료용 병”(21류) : G2507
- “제기(祭器)”(21류) : G2607
- “코펠”(21류) : G4303

〈 G1803 기타 주방용품 〉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거나 저장하는 데 쓰이는 물품들로서, 냄비류나 식기를 제외한 비전기식의 주방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3	6	금속제 바구니		*
	8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포크		
	11	가스그릴(Gas grill),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 요리용 번철		
	16	은박지, 주방용 호일		
	20	비금속제 바구니, 음료용 빨대		
	21	가정용 식음료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24	행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찜통(비전기식)”(21류) : G1801
-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가스콕”(11류) : G1805
- “가스대”(11류) : G1806
- “쌀통”(21류) : G2601

〈 G1804 저장용품 〉

물이나 얼음 등을 담은 비전기식 저장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4	11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		
	21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식료용 병”, “음료용 병”(21류) : G2507
- “가스냉장고”, “냉각통”(11류) : G2802
-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기냉장쇼케이스”(11류) : G3906B

〈 G1805 가열기 〉

전기 아닌 가스, 석유, 휘발유, 알콜, 오일 등으로 열을 가하는 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5	11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풍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스스토브”, “석유스토브”(11류) : G2801
- “전기풍로”, “전자레인지”(11류) : G3906B

〈 G1806 싱크대 〉

음식을 조리하는 싱크대, 주방용 개수대(설거지하는 작업대), 개수통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6	11	싱크대		

〈 G1808 표찰류 〉

이름이나 번호와 같이 짤막한 글을 써서 음각·양각을 하거나 종이나 얇은 나뭇조각 등으로 만든 표찰류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8	6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11	발광성 가옥번호판		*
	16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비직물제 라벨		
	19	비금속제 광고기둥		*

20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21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24	직물제 라벨		
26	경기용 번호표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견출지”(16류) : G2202
- “수동식 라벨부착기구”(16류) : G3601
- “네온사인”(9류) : G3902

〈 G1809 기(旗)류 〉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무엇을 상징하기 위하여, 종이나 천 같은 것에 특정한 그림을 그리거나 빛깔을 넣어 만든 旗와, 旗를 달아매는 깃대나 깃봉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09	16	종이제 기(旗)		
	20	깃대, 깃봉		
	24	비종이제 기(旗)		

〈 G1810 기념품류 〉

우승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되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0	6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14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20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귀금속제 배지”, “메달{귀금속제}”(14류) : G4509A

〈 G1811 부젓가락류 〉

부삽, 부젓가락 등 난로용 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1	8	부삽, 부젓가락		
	21	가정용 석탄통		*

〈 G1812 파리채류 〉

바퀴벌레나 파리를 잡는 데 쓰이는 것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2	5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21	파리채, 포충기		
	28	곤충채집용 채		

〈 G1813 휴대용 난로 〉

방한(防寒)을 위하여 품고 다니는 작은 난로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3	11	휴대용 난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로”(11류) : G2801

〈 G1814 털류 〉

야생동물이나 쥐를 잡는 데 쓰이는 야생동물용 털이나 쥐털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4	6	금속제 야생동물용 털		*
	21	쥐털		
	22	그물형 털		

〈 G1815 화분류 〉

화초를 가꾸는 것과 관련 있는 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5	16	종이제 화분커버		*
	17	꽃꽂이용 폼서포트		*
	20	초목용 지지목(支持木)		
	21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륨(Terrarium), 화분용 물뿌리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생(陸生)동물용 실내테라륨”(21류) : G1816
- “화분받침대(가구)”(20류) : G2601

〈 G1816 어항류 〉

금붕어나 열대어 등의 관상용 물고기를 기르는 기구 및 장치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6	7	수족관용 공기펌프		
	11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19	구조물로 된 수족관		
	21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기펌프”, “압축공기펌프”(7류) : G3824

〈 G1817 애완동물용품 〉

새, 가금류, 애완동물 등을 기르거나 사육하는 것과 관련 있는 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7	1	새잡이 끈끈이		*
	6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18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19	돼지우리, 마구간, 비금속제 닭장		
20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21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28	애완동물용 장난감		
31	애완동물용 모래 종이, 애완동물용 향처리모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생(陸生)동물용 실내테라륨”(21류) : G1816
-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21류) : G3804

〈 G1819 사다리 〉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19	6	금속제 사다리		
	20	비금속제 사다리		
	22	줄 사다리		

〈 G1820 양복솔 〉

양복 먼지나 부푸리기를 털는 데 쓰이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0	21	양복솔		*

〈 G1821 변기용품 〉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는 변기나 화장실과 관련 있는 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1	11	변기, 비데(Bidet)		

	16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
	21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24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환자용 변기”(10류) : G1103

〈 G1822 저금통 〉

집에 두고 돈을 집어 넣어 모아둘 수 있게 만든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2	6	금속제 저금통		
	21	비금속제 저금통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고”(6류) : G2601

〈 G1823 전화기 회전대 〉

전화기가 빙빙 돌아가도록 받치거나 올려놓은 대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3	21	전화기 회전대		*

〈 G1824 재봉용품 〉

섬유제품의 수선과 바느질 또는 다림질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4	8	비전기식 다리미, 비전기식 인두		
	11	가열다리미용 히터		*
	16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20	수틀, 목제 실패		
21	다림질대		
24	자수용 도안직물		
26	바늘꽃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재봉용 바늘”(26류) : G3102
- “비전기식 납땀인두”(8류) : G3103
- “머리손질용 비전기식 인두”(8류) : G3107
- “전기다리미”, “전기인두”(9류) : G3906B

〈 G1825 욕실용품 〉

세면 또는 목욕 등에 관련된 기구나 물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825	11	욕조, 샤워기		
	21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24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27	욕실용 매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정용 석제 물탱크”(19류) : G2502
- “세면대(가구)”(20류) : G2601
-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24류) 및 “매트”(27류) : G2602
- “목욕용 린넨제품”(24류) : G4511

G19 벚짚, 풀짚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901	20	갈대, 밀짚, 벚짚, 보릿짚		
	22	충전용 짚		
	31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G1902	27	돛자리, 거적, 명석		

〈 G1901 짚류 〉

갈대, 밀짚, 벼짚, 보리짚, 왕골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901	20	갈대, 밀짚, 벼짚, 보릿짚		
	22	충전용 짚		
	31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광주리”(20류) : G1803
- “거적”, “돛자리”, “명석”(27류) : G1902
- “밀짚제 병포장제”, “짚제 포장제”(22류) : G2505

〈 G1902 자리류 〉

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하기 위하여 주로 짚을 원재료로 하여 바닥에 까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1902	27	돛자리, 거적, 명석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마니”(22류) : G2505

G20 목재, 죽재, 등(藤), 목피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001	19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20	죽재(竹材)		
	31	통나무		
G2002	19	압축된 코르크		*
	20	고리버들, 등나무 줄기		
	31	미가공 나무껍질		
G2003	22	대팻밥, 톱밥		
	31	펄프제조용 나무조각		*

〈 G2001 목재류 〉

일반 목재나 건축용 목재가 해당되나, 침목류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001	19	건축용 목재, 가공목재		
	20	죽재(竹材)		
	31	통나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주용 목재기둥”, “방부목재”, “방화목재”, “갱도용 목재”(19류) : G3306

〈 G2002 목피류 〉

나중에 가공이 필요한 식물성 기초재료인 덩굴·죽피(竹皮) 등과, 원예 및 임업의 생산물 중 나중에 가공이 필요한 기초재료인 미가공 나무껍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002	19	압축된 코르크		*
	20	고리버들, 등나무 줄기		
	31	미가공 나무껍질		

〈 G2003 톱밥류 〉

나중에 가공이 필요한 식물성 기초재료인 목모(木毛), 대팻밥, 케이폭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003	22	대팻밥, 톱밥		
	31	펄프제조용 나무조각		*

G21 종이,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종이제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101	1	화학시험지		
	2	부활절계란 착색용지		*
	5	방충지		

	16	종이용지		
	17	석면지(石綿紙)		
	27	벽지		
G2102	16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 G2101 종이류 〉

주로 식물성 섬유로 얇고 판판하게 만든 것으로서, 화학시험지, 방충지, 일반적인 종이용지, 석면지, 벽지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101	1	화학시험지		
	2	부활절계란 착색용지		*
	5	방충지		
	16	종이용지		
	17	석면지(石綿紙)		
	27	벽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권연말음종이”(34류) : G0902
- “파리잡이용 종이”(5류) : G1812
-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16류) : G2102
- “등사용지(문방구용)”, “카본페이퍼(문방구)”, “명함용지”(16류) : G2202
- “종이제 상자”(16류) : G2503
- “포장용 종이제 포대”(16류) : G2504
- “감광지”, 청사진지, “사진인화지”(1류) : G3404B
- “지제(紙製) 완구”(28류) : G4301

〈 G2102 화장지 및 휴지류 〉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화장지 및 휴지류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102	16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G22 문방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201	2	인쇄잉크		
	16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G2202	2	그림물감		
	8	팔레트 나이프		*
	9	주판, 계산자(尺)		
	16	문방구		

〈 G2201 인쇄잉크 〉

인쇄 또는 등사용으로 쓰이는 잉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201	2	인쇄잉크		
	16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 G2202 문방구류 〉

통상적으로 문방구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202	2	그림물감		
	8	팔레트 나이프		*
	9	주판, 계산자(尺)		
	16	문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정용 풀”(16류) : G1002
- “곡척(曲尺)”, “부척(副尺)”(9류) : G3106
- “권척(卷尺)”, “측정용 자”(9류) : G3403
- “타임스탬프”(9류), “문서세단기”(16류) : G3601
- “일기장”(16류) : G5201

G23 가죽과 그 모조품, 이를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301	18	가죽		
G2302	18	인조가죽		
	24	인조가죽직물(부직포는 제외)		

〈 G2301 가죽 〉

가공이 필요한 모피, 원피, 원혁, 유혁 등이 해당되나, 최종 가죽제품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301	18	가죽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죽제 지갑”(18류) : G2501
- “가죽옷”(25류) : G4501

〈 G2302 인조가죽 〉

합성가죽 및 인공가죽 등 가죽대체품으로서 천연가죽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것이 해당되나, 최종 인조가죽제품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302	18	인조가죽		
	24	인조가죽직물(부직포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플라스틱시트”(17류) : G2401
- “부직포”, “직물펠트”(24류) : G4904

G24 플라스틱, 고무, 펄프 및 기타 기초재료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401	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16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17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G2402	17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G2403	1	펄프		
G2404	20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뿔		

〈 G2401 플라스틱 〉

외력 또는 열에 의하여 변형된 채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은 성질의 천연 또는 인공으로 된 고분자물질로서, 보통 합성수지를 일컫음.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성형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플라스틱과 반가공 플라스틱 물질과 반제품의 합성수지 등이 포함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401	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16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17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		

〈 G2402 고무 〉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만든 물질로서, 탄력성이 강한 특성이 있음.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성형(成型)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원료로서의 고무와 이들의 반가공품 등이 포함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402	17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 G2403 펄프 〉

목재 등 식물체의 섬유소를 추출하여 기계적·화학적으로 처리한 제품으로서, 쇄목펄프, 화학 펄프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403	1	펄프		

〈 G2404 동물각질류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상태의 패각류와, 나중에 가공이 필요한 동물성 기초재료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404	20	거북 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뿔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상아(보석)”(14류) : G4401B

G25 포대와 기타 용기(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1	16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여권커버]		
	18	가방, 지갑		
	25	머니벨트(의류)		*
G2502	6	금속제 통(탱크/콘테이너)		
	16	종이제 크림용기		*
	19	석제 통		
	20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G2503	6	금속제 상자(박스)		
	16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18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20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21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G2504	16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17	포장용 고무제 포대		
	18	포장용 가죽제 포대		
	22	포장용 직물제 포대		
G2505	22	짚제 포장재, 가마니		
G2506	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봉인재료		
	17	고무제 마개, 고무제 봉인재료		
	20	비금속제 마개(고무제/자기제/유리제는 제외)		

	21	유리제 마개, 도자기제 마개		
G2507	21	병류(꽃병은 제외)		

〈 G2501 가방 및 대물류 〉

가죽·비닐·천 등으로 만들어 물건을 넣어 두거나 들고 다니게 하는 용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1	16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여권커버]		
	18	가방, 지갑		
	25	머니벨트(의류)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18류),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21류) : G1204
- “비금속제 바구니”(20류) : G1803
-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16류) : G2504
- “카메라케이스”(9류) : G3402B
- “탄약케이스”(13류) : G4202
- “골프가방”, “볼링백”, “스키용 가방”(28류) : G4303
- “낚시용구케이스”(28류) : G4304

〈 G2502 통류 〉

물이나 가스·기름 등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용기 및 탱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2	6	금속제 통(탱크/컨테이너)		
	16	종이제 크림용기		*
	19	석제 통		
	20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쌀통”(21류) : G2601
- “가정용 오수정화조”(11류) : G3303

〈 G2503 상자 〉

네모나게 만들어 어떤 물건을 넣어두는 빈 박스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3	6	금속제 상자(박스)		
	16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18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20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21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납상자(장롱)”(20류) : G2601

〈 G2504 포대 및 포장재 〉

종이제·가죽제·직물제 등으로 만든 포대 및 포장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4	16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17	포장용 고무제 포대		
	18	포장용 가죽제 포대		
	22	포장용 직물제 포대		

〈 G2505 가마니 〉

짚으로 낱을 촘촘히 결어서 곡식·소금 등을 담는 데 쓰이는 것으로서 주로 포장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5	22	짚제 포장재, 가마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거적”(27류) : G1902

〈 G2506 마개류 〉

포장용 용기에 사용되는 뚜껑, 마개, 밀봉캡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6	6	금속제 마개, 금속제 봉인재료		
	17	고무제 마개, 고무제 봉인재료		
	20	비금속제 마개(고무제/자기제/유리제는 제외)		
	21	유리제 마개, 도자기제 마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식기커버”(21류) : G1803

〈 G2507 병류 〉

액체 등을 담기 위하여 유리·사기·오지·플라스틱 따위로 만든 목이 좁은 용기로서, 음료·화장품·식품·약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병이 해당되나, 꽃병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507	21	병류(꽃병은 제외)		

G26 가구, 침구, 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1	6	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1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
	14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20	가구		
	21	쌀통		*
G2602	6	구두호텔이용 금속제 매트		*
	16	종이제 식탁용품, 실내장식용 종이제 커버		
	18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커버		
	20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24	직물제 식탁용품,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직물제 커버		
	26	러그족		*

	27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28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31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G2603	21	도자기, 꽃병, 수반		
G2604	20	액자		
	24	직물제 족자		
	27	비직물제 족자		
G2605	6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19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20	비금속제 바람개비, 옥외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22	차양, 천막		
G2606	20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22	해먹		
	24	이불, 침낭, 침대커버, 베갯잇		
G2607	6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19	비금속제 묘비(석제는 제외)		
	20	관(棺), 납골단지		
	21	제기(祭器), 향로		
	24	수의		

〈 G2601 가구류 〉

가정에 설치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상점 등에 설치하는 것이라도 가구적인 것이면 해당됨. 특히 옷장, 탁자 등 목제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1	6	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1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
	14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20	가구		
	21	쌀통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물침대”, “의료용 및 치과용 팔걸이의자”, “진료대”(10류) : G1101
- “화장지걸이”(21류) : G1821
- “수건걸이”(21류) : G1825
- “편지꽂이”(16류) : G2202
- “사진용 선반”(9류) : G3402B
- “이미용 의자”(20류) : G3604
- “선반(旋盤)(목공용은 제외)”(7류) : G3801
- “목공선반”(7류) : G3813
- “체력단련용 벤치”(28류) : G4303

〈 G2602 옥내장치용품 〉

집안에 장식용으로 설치한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2	6	구두휴털이용 금속제 매트		*
	16	종이제 식탁용품, 실내장식용 종이제 커버		
	18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커버		
	20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련, 비직물제 벽면장식		
	24	직물제 식탁용품,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직물제 커버		
	26	러그족		*
	27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28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		
	31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욕실용 매트”(27류) : G1825
- “돛자리”, “자리”, “화문석”(27류) : G1902
- “직물제 족자”(24류), “비직물제 족자”(27류) : G2604
- “차양”(22류) : G2605
- “매트리스”(20류) : G2606
- “자동차용 시트커버”(12류) : G3705
-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4류) : G4004
- “스포츠용 매트”, “체육관용 매트[체조용 매트]”(27류) : G4303

〈 G2603 화병류 〉

꽃을 꽂아두는 용기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3	21	도자기, 꽃병, 수반		

〈 G2604 액자류 〉

그림·글씨·사진 등을 넣어 벽에 걸기 위한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4	20	액자		
	24	직물제 족자		
	27	비직물제 족자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사진꽂는 스탠드”(16류) : G2202

〈 G2605 옥외장식품 〉

집밖에 장식용으로 설치한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5	6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19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20	비금속제 바람개비, 옥외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22	차양, 천막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벨”(28류) : G2602
- “자동차용 차양”(12류) : G3705
-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22류) : G4303

〈 G2606 침구류 〉

잠자는 데 쓰이는 용구로서, 이부자리나 베개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6	20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22	해먹		
	24	이불, 침낭, 침대커버, 베갯잇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침대”(20류) : G2601
-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전기이불”(11류) : G3906B
- “캠핑용 침낭”(20류) : G4303

〈 G2607 혼상제구 〉

장제(葬祭)에 쓰이는 여러가지 용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607	6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19	비금속제 묘비{석제는 제외}		
	20	관(棺), 납골단지		
	21	제기(祭器), 향로		
	24	수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혼상용 조화화환”(26류), “혼상용 생화화환”(31류) : G4512

G27 신발, 우산, 지팡이, 부채와 그들의 부속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1	9	방호용 신발		
	17	석면제 구두밑창		*
	25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G2702	14	귀금속제 구두장식		
	18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
	21	구둣솔, 구둣주걱		
	22	구두궤매는 실		*
	26	구두끈, 비귀금속제 구두장식		
G2703	18	우산, 양산		
G2704	6	지팡이용 금속제 테		*
	18	지팡이		
G2705	20	부채		

〈 G2701 신발류 〉

일상적으로 보행(步行)에 사용되는 신발이나 운동용 특수신발, 신발에 직접 부착되는 부속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1	9	방호용 신발		
	17	석면제 구두밑창		*
	25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 G2702 구두용품 〉

구두와 관련되어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필요한 용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2	14	귀금속제 구두장식		
	18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
	21	구둣솔, 구둣주걱		
	22	구두궤매는 실		*
	26	구두끈, 비귀금속제 구두장식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두약”, “구두재봉실용 왁스”(3류) : G1505

〈 G2703 우산류 〉

우산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3	18	우산, 양산		

〈 G2704 지팡이 〉

지팡이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4	6	지팡이용 금속제 테		*
	18	지팡이		

〈 G2705 부채 〉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간단한 도구인 부채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705	20	부채		

G28 난방기구, 냉방기구와 냉장기계기구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801	6	난로용 장작받침쇠		*
	11	난로(전기난로는 제외)		
G2801B	11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3A	
G2802	11	냉동기,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G2803	11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 G2801 난방기류 〉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해당되나, 가정용 전열용품이나 수송기계기구용 히터는 제외됨.

〈 G2801B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 〉

비수송기계기구용 보일러(G3823A)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801	6	난로용 장작받침쇠		*
	11	난로(전기난로는 제외)		
G2801B	11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	G3823A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석유버너”, “휘발유버너”(11류) : G1805
- “휴대용 난로”(11류) : G1813
- “자동차용 히터”(11류) : G3705
- “전기스토브”, “가정용 전기화로”(11류) : G3906B

〈 G2802 냉동기계기구 〉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구가 해당되나, 가정용이나 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802	11	냉동기,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정용 얼음냉장고(전기식은 제외)”(11류) : G1804
- “선박용 냉난방장치”(11류) : G3702
- “항공기용 냉난방장치”(11류) : G3703
-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11류) : G3704
- “자동차용 냉난방장치”(11류) : G3705
-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11류) : G3812
- “가정용 전기냉장고”(11류) : G3906B

〈 G2803 환기용 기계기구 〉

공기의 환기 또는 환풍을 위한 기계기구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803	11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G29 등류와 그 부속품(전기·전지용품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901	4	램프용 심지		
	11	비전기식 조명기기		
G2902	21	촛대		

〈 G2901 등류 〉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비전기식 기구 및 그 부속품과, 등화(燈火)에 필요한 중간매개 물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901	4	램프용 심지		
	11	비전기식 조명기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조명기구”(11류) : G3902

〈 G2902 촛대류 〉

불을 켜기 위해 초를 세워놓는 기구나 촛불을 소등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구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2902	21	촛대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촛대”(28류) : G2602

G30 못·볼트·너트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001	6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썬기		
	11	수도꼭지용 좌금		*
	17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20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썬기, 비금속제 리벳(Rivet)		
G3002	6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9	전기자물쇠		
	20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26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

〈 G3001 못·볼트·너트류 〉

목재 등을 박는 못이나, 기계부품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볼트, 너트(압나사) 등이 해당됨. 주로 그 자체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기계부품이나 금속물 또는 목재 등을 죄거나 연결시키기 위하여 끼우는 것 등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001	6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썬기		
	11	수도꼭지용 좌금		*
	17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20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썬기, 비금속제 리벳(Rivet)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도어볼트(Door bolts)”(6류) : G3002
- “금속제 교량이음용 앵커볼트”(6류), “수도꼭지”(11류) : G3303

〈 G3002 자물쇠류 〉

여닫는 물건에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자물쇠류나, 커튼에 사용되는 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002	6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9	전기자물쇠		
	20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		
	26	커튼상단부용 테이프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샤워커튼”(24류) : G1825
-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24류) : G2602
- “금속제 문노크장치”(6류) : G3303

G31 수동공구, 수동이기류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기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1	6	금속제 칼자루		*
	8	도검(刀劍), 도끼, 송곳, 작살, 휴대무기		
	20	비금속제 칼자루		*
G3102	26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G3103	6	모루, 비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
	8	드라이버, 렌치, 몽키, 스패너, 집게, 해머 (비고 : 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20	비금속제 공구손잡이		*
G3104	7	전동브러시(기계부품용)		*
	16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21	공업용 솔, 선박용 솔, 전동브러시(기계부품은 제외)		
G3105	3	연마재		
	8	숫돌, 연마용 강철		

G3106	6	금속제 줄밥		*
	8	끝, 대패, 톱		
	9	목수용 자(尺)		
	20	톱질모탕		*
G3107	8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 G3101 수동이기류 〉

주로 예리한 부분이 있어서 물체를 자르거나 깎거나 찌르는 것으로서, 전동식이 아닌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해당되나,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면도(面刀)나 양식용 나이프, 팔레트 나이프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1	6	금속제 칼자루		*
	8	도검(刀劍), 도끼, 송곳, 작살, 휴대무기		
	20	비금속제 칼자루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외과용 칼”(10류) : G1101
- “고기씨는 큰 칼”, 양식용 나이프, “식칼”(8류) : G1803
- “팔레트 나이프”(8류) : G2202
- “면도(面刀)”(8류) : G3107

〈 G3102 침(針)류 〉

옷 따위를 짓거나 기울 때 쓰이거나 뜨개질 할 때에 쓰이는 한 끝이 뾰족한 가늘고 긴 용구가 해당되나, 재봉틀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2	26	바늘(재봉틀용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메리야스기계용 편침”(26류) : G3811
- “재봉틀용 바늘”(26류) : G3817

〈 G3103 수동공구류 〉

수동이기류 이외의 것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움직이는 공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3	6	모루, 비이스용 금속제 조임구		*
	8	드라이버, 렌치, 몽키, 스패너, 집게, 해머 (비고 : 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20	비금속제 공구손잡이		*

〈 G3104 브러시류 〉

브러시 중에서 주로 공구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4	7	전동브러시(기계부품용)		*
	16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21	공업용 솔, 선박용 솔, 전동브러시(기계부품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용 솔”, “머리솔”, “면도용 솔”(21류) : G1204
- “가구닦는 솔”, “램프유리닦는 솔”, “세탁용 솔”, “탱크 및 용기세척용 솔”(21류) : G1401
- “소스팬 닦는 금속제 솔”, “접시 닦는 솔”, “케이스브러시”(21류) : G1803
- “양복솔”(21류) : G1820
- “회화용 솔”(16류) : G2202
- “구둣솔”, “신발솔”(21류) : G2702
- “말용 솔”(21류) : G3804
- “브러시용 毛”(21류) : G4704

〈 G3105 연마용 기구류 〉

금속·보석·유리·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비동력식 내지 비기계식의 수동식 연마용 기구와 그 부분품이 해당되고, 어떤 물체를 연마하는 데 필요한 용구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5	3	연마재		
	8	숫돌, 연마용 강철		

〈 G3106 목수용품류 〉

목수가 주로 사용하는 수공구 및 측정기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6	6	금속제 줄밥		*
	8	끌, 대패, 톱		
	9	목수용 자(尺)		
	20	톱질모탕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제도용 T자”, “제도용 컴퍼스”, “직각자”(16류) : G2202
- “목공기계”, “제재기계”(7류) : G3813
- “권척(卷尺)”, “측정용 자”(9류) : G3403

〈 G3107 비전기식 이·미용기류 〉

이·미용에 이용되는 비전기식의 제반 수동기구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107	8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 손톱깎이”, “전기면도기”, “전기이발기”(8류) : G3906B

G32 금속과 그 반가공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을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201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G3202	1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G3203	6	땜납, 용접용 금속봉		

〈 G3201 철 및 강류 〉

주로 鐵 및 鋼, 그 반가공품이나 부스러기 등이 해당되나, 단 완성품이 된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타 유사군코드로 분류됨. 반가공품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은 용도가 한정되더라도 나중에 가공이 필요치 않고 그 자체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반가공품의 단계에 있는 주강(鑄鋼), 단강(鍛鋼)등은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201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 G3202 비철금속류 〉

핵연료물질은 금속원소 또는 그 동위원소이므로 연료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됨. 또한 단체(單體)로서 금속원소와 그 금속을 주체로 하는 합금을 종합한 것이므로 부스러기도 포함됨. 단, 나트륨과 칼륨 등은 다른 금속과 같이 정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제법(製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202	1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6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나트륨”, “칼륨”(1류) : G1001
- “납광석[연광석]”, “니켈광석”, “수은광석”, “창연광석”(6류) : G1601

〈 G3203 용접봉 〉

금속을 접합시키는 데 필요한 용점이 낮은 금속으로서 땀질용 금속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203	6	땀납, 용접용 금속봉		

G33 시멘트·석재와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1	19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G3302	19	석재, 인조석재		
G3303	6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11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17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19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비고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에는 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가 포함됨)		
	20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
	21	자기제 문손잡이		*
	27	인조 잔디		
G3304	6	금속제 타일		
	19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20	반사경 타일		
G3305	6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11	이동식 간이화장실		
	19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G3306	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
	19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 G3301 시멘트 〉

협회의 시멘트나 시멘트의 기초제품 등이 해당되나, 일정 용도를 목적으로 가공한 완성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1	19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석회석”(19류) : G1601
- “콘크리트타일”(19류) : G3304
- “콘크리트기둥”, “콘크리트침목”(19류) : G3306

〈 G3302 석재류 〉

암석을 일정 모양으로 잘라낸 건축용 석재가 해당되나, 단 미가공의 암석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2	19	석재, 인조석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대리석(가공하지 않은 것)”, “화강암(가공하지 않은 것)”(19류) : G1601
- “대리석제 조각품”(19류) : G5203

〈 G3303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

전용재료라는 의미상 건축과 구축에 한정된 재료임. 만약 철판이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철 및 강류(G3201)로 분류되나, 천정판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에 해당됨. 또한 물품자체가 건축 또는 구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것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3	6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11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17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19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비고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에는 고무제, 리놀륨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가 포함됨)		
	20	비금속제 경첩, 비금속제 문 부속품		*
	21	자기제 문손잡이		*
	27	인조 잔디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건축용 유리”(19류) : G1701
- “건축용 목재”(19류) : G2001
- “하수용 정화설비”(11류) : G3810

〈 G3304 타일류 〉

건축용 재료로서 사용되는 벽이나 바닥 따위에 붙이는 작거나 얇은 판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4	6	금속제 타일		
	19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20	반사경 타일		

〈 G3305 기타 건축재 〉

간이식 구조물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건축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5	6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11	이동식 간이화장실		
	19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 G3306 침목류 〉

길고 큰 물건 밑을 괴는 나무토막 내지 콘트리트 재료 등이 해당되나, 목재류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306	6	금속제 말뚝, 금속제 전주		*
	19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건축용 목재”(19류) : G2001
- “금속제 갱도용 재료”(6류), “비금속제 갱도용 재료”(19류) : G3303

G34 이화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광학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을 제외)·사진기계기구·영화기계기구·측정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 및 전기자기측정기는 제외)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사진재료 및 안경과 그 부속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1	9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11	실험실용 가열기기		
	16	교육용 생물체조직		*
G3402	9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G3402B	9	사진기기	G3404B	
G3403	9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자동조절기기		
G3404B	1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G3402B	
G3405	9	안경, 콘택트렌즈		

〈 G3401 이화학기계기구 〉

주로 자연과학의 연구용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단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나, 각종 계측 및 제어기기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1	9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11	실험실용 가열기기		
	16	교육용 생물체조직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농도계”, “비중계”(9류) : G3403
- “전해조”(9류) : G3810
- “비실험실용 노(爐)”(11류) : G3816
- “사이클로트론”(9류) : G3908

〈 G3402 광학기계기구(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영화기계기구 〉

- 광학기계기구 : 물체를 확대 또는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계기구로서, 전자응용기계기구인 전자현미경 등은 제외됨.
- 영화기계기구 : 영화 촬영, 현상, 편집, 녹음, 영사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로서, 영화 이외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됨.

〈 G3402B 사진기계기구 〉

사진 촬영에 관련된 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되며, 시청각교육용 기계기구인 슬라이드영사기도 포함됨. 사진재료(G3404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2	9	광학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 영화기기		
G3402B	9	사진기기	G3404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안경”(9류) : G3405
- “음향 및 영상의 기록/전송/재생용 장치”(9류) : G3907A
- “방송용 비디오카메라”(9류) : G3907B
- “전자현미경”(9류) : G3908

〈 G3403 측정기계기구 〉

- 기본단위계량기기 : 자, 저울, 되, 말 등 기본단위를 측정하는 기기로부터 가스미터, 면적계, 한란계 등이 해당됨.
- 유도단위계량기기 : 회전계, 속도계, 압력계 등 움직이는 기체나 고체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
- 정밀측정기기 : 비교적 복잡한 기구를 가지며 부품이나 조립에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측정기기임. 길이계이지, 비교측정기, 평면도 측정기 등이 해당됨.
- 재료실험기기 : 금속·시멘트·콘크리트·목재·섬유재료·고무·플라스틱 등의 성능 따위를 테스트하는 기기임.
- 자동조절기기 : 오토메이션(Automation)장치를 일컫는 것으로서, 습도·열량·압력 등을 알맞게 조절하는 기계기구임.
- 기타 측량측정기 : 측정기구의 특성상 어느 쪽으로 꼭 분류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기계의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측정기기로서 기능하는 것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3	9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자동조절기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혈구계산기”, “혈압계”, “혈액검사기”(10류) : G1101
- “계산자(尺)”(9류) : G2202
- “곡척(曲尺)”, “목수용 자”, “부척(副尺)”(9류) : G3106
-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9류) : G3904
- “초음파응용측심기”(9류) : G3908

〈 G3404B 사진재료 〉

화학적 제품, 지류(紙類), 플라스틱 등 재질을 불문하고, 사진 촬영·현상·인화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해당되며, 영화용의 것도 포함됨. 필름중에서는 “미노광(未露光) 필름”만이 해당됨. 사진기계기구(G3402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4B	1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G3402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노광된 필름”, “슬라이드필름”(9류) : G5204

〈 G3405 안경 〉

근시·원시 등 불완전한 시력을 돕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 및 그 부분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405	9	안경, 콘택트렌즈		

G35 시계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G3501 시계와 그 부품 〉

시각을 나타내거나 시간을 재는 장치 또는 기계로서, 전기시계, 전자시계, 자동차용 시계 등 모든 종류의 시계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501	14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타임레코더”(9류) : G3601

G36 사무용 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와 그 부품 및 부속품, 기타의 기계기구로서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1	7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8	동전삽		*
	9	계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기		
	16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20	제도대		*
G3602	9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G3603	9	주유기기		
G3604	20	이미용 의자		
G3605	8	경찰봉		
	9	구멍장치, 방탄조끼, 수영재킷, 안전벨트		
	12	낙하산		
G3606	9	소화(消火)기기, 화재피난장치		
	17	석면제 소방용품, 소방용 호스		
G3607	9	경보기기		
G3608	6	금속제 교통표지(기계식과 발광식은 제외)		
	9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19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G3609	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G3610	15	악기 조율기		
G3611	28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G3612	7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G3613	7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9	전기식 문 개폐장치		

〈 G3601 사무용 기계기구 〉

사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반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1	7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8	동전삽		*
	9	계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기		
	16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20	제도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편치(수공구)”(8류) : G3101
- “텔레타이프라이터”, “팩시밀리”(9류) : G3907B
- “전자복사기”, “전자수첩”, “전자타자기”(9류) : G3908
- “제도용 패드”, “제도용 핀”, “제도용 T자”, “제도용 컴퍼스”, “자기스탬프”, “스탬프대”, “스탬프용 패드”, “스탬프케이스”, “사무용 편치”(16류) : G2202

〈 G3602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기가 해당되나, 전자식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2	9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자자동판매기”(9류) : G3908

〈 G3603 주유기기 〉

기름이나 가스를 넣는 장치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3	9	주유기기		

〈 G3604 이·미용 의자 〉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전용 의자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4	20	이미용 의자		

〈 G3605 구명용구 〉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이는 기구가 해당됨. 특히 낙하산은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보기보다는 구명용구에 가까워 포함시키나, 구명보트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5	8	경찰봉		
	9	구명장치, 방탄조끼, 수영재킷, 안전벨트		
	12	낙하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명보트”(9류) : G3702
- “자동차안전장치용 에어백”, “자동차용 어린이안전좌석”, 자동차좌석용 안전벨트”(12류) : G3705
- “사고방지용 장갑”(9류) : G4504

〈 G3606 소화기류 〉

불을 끄는 것과 관련된 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6	9	소화(消火)기기, 화재피난장치		
	17	석면제 소방용품, 소방용 호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고무호스”(17류) : G2402
- “소방정”(9류) : G3702
- “소방차”(9류) : G3705
- “방화피복”(9류) : G4507

〈 G3607 경보기기 〉

단순히 신체가 아닌 도난방지, 화재, 방범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자식 내지 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7	9	경보기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자동차용 도난방지경보장치”(12류) : G3705
- “전자식 경고벨”, “중앙경보장치”(9류) : G3908

〈 G3608 교통신호기 〉

교차로나 횡단로·건널목 등에 설치해 놓은 신호기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8	6	금속제 교통표지(기계식과 발광식은 제외)		
	9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19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선박용 방향표시등”(11류) : G3702

〈 G3609 잠수용 기기 〉

주로 수중작업에 사용되는 잠수용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09	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잠수용 장갑”(9류) : G4504
- “잠수복”(9류) : G4507

〈 G3610 악기 조율기 〉

악기의 음을 일정한 기준 음에 맞추어 고르어 주는 악기 보조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10	15	악기 조율기		

〈 G3611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기 〉

유원지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은 유원지용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11	28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 G3612 잔디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

전동식 내지 기계식의 잔디깎는 기계가 해당되나, 수동식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12	7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제초기”(7류) : G3804

〈 G3613 전동식 문자동개폐장치 〉

전기 등의 힘으로 움직이는 문자동개폐장치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613	7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9	전기식 문 개폐장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자응용자동문개폐장치”(9류) : G3908

G37 수송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1	6	하역용 금속제 팔레트		
	7	하역기계, 승강기계		
	9	리프트조작장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
	12	전인차,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20	하역용 비금속제 팔레트		
G3702	6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7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
	9	구명보트, 소방정(消防艇)		
	11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2	선박(에어쿠션식은 제외),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20	비금속제 계선부표		
	22	선박용 돛		
G3703	9	인공위성		
	11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12	항공기, 항공기의 부품 및 부속품		
G3704	11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12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G3705	7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9	소방차		
	11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12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13	전차(戰車)		
G3706	11	자전거용 조명기기		
	12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707	12	손수레, 썰매, 유모차 핸드카, 에어쿠션식 수송정(輸送艇)		
G3708	12	타이어, 튜브		
G3711B	12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G3826B	
G3712B	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G3827B	

〈 G3701 운반기계기구 〉

화물 또는 사람을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반하거나, 하역에 사용되는 운반기계기구가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1	6	하역용 금속제 팔레트		
	7	하역기계, 승강기계		
	9	리프트조작장치, 엘리베이터조작장치		*
	12	견인차,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20	하역용 비금속제 팔레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환자용 호이스트”(10류) : G1101
- “덤프카”, “리프트카”, “사다리차”, “지게차”(12류) : G3705
- “오징어권양기”(7류) : G3809

〈 G3702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선박에 관계되는 기계기구 대부분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특히 구명보트는 그 자체가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2	6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7	선박용 자동사각갈고리		*
	9	구명보트, 소방정(消防艇)		
	11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2	선박(에어큐션식은 제외),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9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20	비금속제 계선부표		
	22	선박용 돛		

〈 G37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수송기계기구 중 공중을 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3	9	인공위성		
	11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12	항공기, 항공기의 부품 및 부속품		

〈 G37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

선로 위를 달리는 차량과 여기에 따르는 전용장치 및 그 부품·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4	11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12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철도가 아닌 육상에서 달리는 차량과 그 부품·부속품이 해당됨. 특히 오토바이는 포함되나, 자전거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5	7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9	소방차		
	11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12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13	전차(戰車)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자동차용 카펫”(27류) : G2602
- “수송기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9류) : G3403
- “자동차용 시계”(14류) : G3501
- “경운기”, “콤바인”(7류), “농업용 트랙터”(12류) : G3804
- “차량용 안테나”, “차량용 통신기계기구”(9류) : G3907B

〈 G3706 자전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자전거와 그 부품·부속품이 해당되므로 완성품뿐만 아니라 자전거용 펌프, 안장커버 등도 해당됨. 단, 오토바이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6	11	자전거용 조명기기		
	12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 G3707 기타 수송기계기구 〉

수송기계기구 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송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7	12	손수레, 썰매, 유모차 핸드카, 에어쿠션식 수송정(輸送艇)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휠체어”(12류) : G1101

〈 G3708 타이어 및 튜브 〉

모든 수송기계기구에 필요한 타이어와 튜브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08	12	타이어, 튜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자동차용 차륜”(12류) : G3705

- “자전거용 바퀴”(12류) : G3706

〈 G3711B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기 〉

수송기계기구용으로서 완충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가 해당됨. 비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G3826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11B	12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G3826B	

〈 G3712B 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 〉

수송기계기구용으로서 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제동장치(기계요소)가 해당됨. 비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G3827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712B	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G3827B	

G38 산업기계기구·동력기계기구(전동기는 제외)·풍수력기구와 그들의 부품 및 부속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기계요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1	6	금속제 바이스작업대		*
	7	금속가공기계		
	9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20	비금속제 바이스작업대		*
G3802	7	광산기계		
G3803	7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G3804	6	금속제 낫자루		*
	7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8	수동식 농기구, 가축도살용 기구		
	9	가축사육용 전기울타리		*
	11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12	농업용 트랙터		
	18	동물용 여물주머니		*
	20	사료선반		
	21	가축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G3806	7	착유(搾乳)기기		
G3807	20	별집, 별통용 재료		
G3808	7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9	검란기		*

G3809	6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7	어업용 기계		
	19	비금속제 인공어초		
	22	어망용 부자		*
G3810	7	산업용 화학기계, 폐기물처리기계		
	9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 전기도금장치, 전해조(電解槽)		
	11	증류장치, 정수장치, 공기정화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장치		
G3811	7	섬유기계		
	26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G3812	7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11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G3813	7	제재기계, 목공기계		
G3814	7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G3815	7	인쇄기계, 제본기계		
	16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G3816	11	공업용 노(爐)		
G3817	7	봉제기계		
	26	재봉틀용 바늘		
G3818	7	가죽가공기계		
	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
G3819	7	담배가공기계		
	11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G3820	7	유리가공기계		
G3821	6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
	7	도장(塗裝)기계		
	19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
G3822	7	포장(包裝)기계		
G3823	7	동력기계(증기보일러와 육상차량용은 제외)		
	12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G3823A	7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G2801B	
G3824	7	펌프, 압축기, 송풍기		
	8	수동식 펌프		*
G3825	7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12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G3826B	7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G3711B	
	17	고무제 완충기	G3711B	
G3827B	7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712B	
G3828	6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7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11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12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Coupling), 차축 저널(Axle journal)		
	17	가스켓,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1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징		
	19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20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G3829	7	수차(水車), 풍차		
G3830	7	세척기계		
G3831	7	주차기계		
G3832	7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 G3801 금속가공기계기구 〉

금속공작기계기구, 금속1차제품제조기계기구, 금속2차제품제조기계기구, 동력 공구류, 절삭 공구류(금속가공기계기구 및 동력식 공구의 부품적인 것도 포함), 용접 및 용단기계기구와 그 부속품이 해당되나, 수동공구류 및 수동이기류는 제외됨.

- 금속공작기계기구 : 밀링, 보어링, 선반 등 기계적인 공작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
- 용접 및 용단기계기구 : 가스, 공압이나 동력 또는 전기(전열)를 이용하여 두 쇠붙이를 녹이어 붙이거나 잇는 용접장치와, 공작물을 깎는 용단장치
- 절삭공구 : 수동기구가 아닌 전동식의 것으로서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깎을 때 쓰이는 기계기구나 그 부분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1	6	금속제 바이스작업대		*
	7	금속가공기계		
	9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20	비금속제 바이스작업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핸드드릴(수공구)”, “편치(수공구)”(8류) : G3101
- “용접용 금속봉”(6류) : G3203
- “용접마스크”(9류) : G4506

〈 G3802 광산기계기구 〉

광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2	7	광산기계		

〈 G3803 토목·건축 기계기구 〉

토목·건축전용기계기구로서, 둑·교량·항만·철도·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또한 석재가공기계기구도 포함되나, 건설차량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3	7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굴착기”, “그레이더(Grader), “불도저”(7류) : G3705

〈 G3804 농·축산용 기계기구 〉

도축용 기계기구와 및 파종·수확·탈곡에 관련된 농업용 기계기구 대부분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4	6	금속제 낫자루		*
	7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		
	8	수동식 농기구, 가축도살용 기구		
	9	가축사육용 전기올타리		*
	11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12	농업용 트랙터		
	18	동물용 여물주머니		*
	20	사료선반		
	21	가축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		

〈 G3806 착유기기 〉

가축의 젖을 짜는 데 쓰이는 기계기구로서, 일종의 낙농기계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6	7	착유(搾乳)기기		

〈 G3807 양봉용구 〉

꿀이나 꽃가루 따위를 얻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데 쓰이는 용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7	20	벌집, 벌통용 재료		

〈 G3808 부란기 〉

정온기(定溫器)의 한가지로 달걀을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데 쓰이는 부란기(부화기)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육추기, 검란기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8	7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9	검란기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누에암수감별기”(7류) : G4602

〈 G3809 어업용 기계기구 〉

어업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09	6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7	어업용 기계		
	19	비금속제 인공어초		
	22	어망용 부자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어선”(12류) : G3702
- “어망제조용 북”(26류) : G3811
- “어망”(22류) : G5002

〈 G3810 화학기계기구 〉

화학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치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0	7	산업용 화학기계, 폐기물처리기계		
	9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 전기도금장치, 전해조(電解槽)		
	11	증류장치, 정수장치, 공기정화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장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실험실용 이화학기기”(9류), “화학기계기구용 열판”(11류) : G3401
- “가정용 정수기”(11류)는 G1803(기타 주방용품)으로 분류됨.

〈 G3811 섬유기계기구 〉

천연섬유나 화학섬유를 가공하여 실이나 직물을 만드는 기계기구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1	7	섬유기계		
	26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재봉틀용 바늘”(26류) : G3817

〈 G3812 식료·음료가공기계기구 〉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식료품 및 음료수를 가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대부분이 해당되나, 가정용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2	7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11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식 요구르트제조기”, “전기식 커피여과기”(11류) : G3906B

〈 G3813 제재·목공기계기구 〉

목재 벌채 전용이거나 각목이나 널빤지 등을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기구 대부분이 해당됨. 특히 동력식 공구도 포함되나, 수동이기류 및 수동공구류는 제재 또는 목공에 사용될지라도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3	7	제재기계, 목공기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대패”, “톱”(8류) : G3106
- “선반(旋盤)(목공용은 제외)”, “보오르반(목공용은 제외)”(7류) : G3801

〈 G3814 펄프·제지기계기구 〉

펄프나 종이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4	7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 G3815 인쇄·제본기계기구 〉

인쇄 또는 제본기계기구 대부분이 해당되며, 활자·인쇄판 등도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5	7	인쇄기계, 제본기계		
	16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등사기”, “등사판”(16류) : G3601

〈 G3816 공업용 노(爐) 〉

열을 이용하여 물체를 고온에 가열·용해 또는 소성(燒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爐)가 해당되나, 실험실에 사용되는 노(爐)는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6	11	공업용 노(爐)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실험실용 노”(9류) : G3401

〈 G3817 봉제기계 〉

피륙·가죽 따위를 바느질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공업용 재봉틀과 재봉틀바늘·재봉틀바늘통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7	7	봉제기계		
	26	재봉틀용 바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바늘(재봉틀용은 제외)”(26류) : G3102

〈 G3818 가죽가공기계 〉

가죽을 가공하는 기계와 구두제조기계, 혁지연마기계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8	7	가죽가공기계		
	8	구두제조용 구두형(수공구)		*

〈 G3819 담배가공기계 〉

담배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기계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19	7	담배가공기계		
	11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 G3820 유리가공기계 〉

유리기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기계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0	7	유리가공기계		

〈 G3821 도장기계 〉

도료를 칠하거나 발라 치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1	6	페인트분무용 금속제 부스		*
	7	도장(塗裝)기계		
	19	페인트분무용 비금속제 부스		*

〈 G3822 포장기계 〉

물건을 싸서 꾸리거나 봉하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2	7	포장(包裝)기계		

〈 G3823 동력기계기구(증기보일러는 제외) 〉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기구와, 이에 따른 전용부품(기계요소) 및 부속품이 해당되나, 증기보일러는 제외됨.

〈 G3823A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G2801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3	7	동력기계(증기보일러와 육상차량용은 제외)		
	12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G3823A	7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	G2801B	

〈 G3824 펌 · 수력기계기구 〉

액체 또는 기체를 분출시키거나, 높은 곳에 밀어 올리거나, 고압탱크에 압축하기 위하여, 액체 또는 기체에 압력을 가하는 기계기구가 해당됨. 즉 액체를 분출시키는 기구는 펌프이고, 기체의 경우는 송풍기 · 공기압축기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4	7	펌프, 압축기, 송풍기		
	8	수동식 펌프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차”, “풍차”(7류) : G3829

〈 G3825 동력전도장치 〉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기구와, 이에 따른 전용부품(기계요소) 및 부속품이 해당됨. 엔진이나 모터에서 발생된 힘을 필요한 부분에 전달하는 장치로써 벨트, 기어, 캠 등이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5	7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		
	12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 G3826B 비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기 〉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기가 해당됨.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G3711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6B	7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	G3711B	
	17	고무제 완충기	G3711B	

〈 G3827B 비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 〉

비수송기계기구용의 것으로서, 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제동장치(기계요소)가 해당됨. 수송기계기구용 제동장치(G3712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7B	7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712B	

〈 G3828 기타 기계요소 및 밸브류 〉

기계기구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8	6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7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		
	11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12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Coupling), 차축 저널(Axle journal)		
	17	가스켓,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18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징		
	19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20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		

〈 G3829 수차·풍차 〉

물이나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로서, 수력터빈 이외의 간단한 구조의 수차(水車)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29	7	수차(水車), 풍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수송기계기구용 수력터빈”, “선박 또는 항공기용 수력터빈”(7류), “육상차량용 수력터빈”(12류) : G3823

〈 G3830 세척기계 〉

물이나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는 동력세척장치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30	7	세척기계		

〈 G3831 주차기계 〉

차량의 주차와 관련되는 장치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31	7	주차기계		

〈 G3832 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 〉

플라스틱 및 고무의 제조, 가공과 관련되는 기계장치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832	7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G39 전기기계기구·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의료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은 제외)·전기재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1	7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9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기		
	12	육상차량용 모터		
G3902	9	네온사인		
	11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G3903	4	전기에너지		
	9	전지		
G3904	9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G3905B	6	안테나선	G3909B	*
	9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G3909B	
G3906B	7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G3907A	
	8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G3907A	
	9	전기다리미, 전기버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G3907A	
	10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G3907A	
	1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G3907A	
	21	전기빔, 전기칫솔	G3907A	
G3907A	9	전기음향영상기기	G3906B, G3908B	
G3907B	9	전기통신기기	G3908B	
G3908	7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9	전자응용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관		
G3908B	9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G3907A, G3907B	
G3909	9	전극,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17	전기절연재료		
G3909B	17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G3905B	*

〈 G3901 회전전기기계·배전용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모터류 〉

수력이나 화력·원자력 따위를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는 기계인 발전기나 전기에너지를 공급 받아 회전에너지로 바꾸는 모터류, 또한 전력이나 전류를 공급해주거나 제어해 주는 배전용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1	7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		
	9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기		
	12	육상차량용 모터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축전지”(9류) : G3903

〈 G3902 전구류 및 조명기구 〉

전구류 및 전기식 조명용 기구 대부분이 해당되나, 의료용 및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구는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2	9	네온사인		
	11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술용 조명기구”, “의료용 램프”(10류) : G1101
 - “비전기식 조명기기”(11류) : G2901
 - “분광기”, “투광기”(9류) : G3402
 - “사진용 섬광전구”(9류) : G3402B
 - “선박용 조명기기”(11류) : G3702
 - “항공기용 조명기기”(11류) : G3703
 - “철도차량용 조명기기”(11류) : G3704
 - “자동차용 조명기기”(11류) : G3705
 - “자전거용 조명기기”(11류) : G3706
 - “무대조명조절용 장치”, “조명기구 안정기”(9류) : G3901B

〈 G3903 전기에너지·전지 〉

전기에너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하여 전류를 일으키는 것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3	4	전기에너지		
	9	전지		

〈 G3904 전기자기측정기 〉

전기의 단위 또는 자기의 단위를 측정하는 것이 해당되나, 전기 또는 자기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4	9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 G3905B 전선 및 케이블 〉

전류가 통하도록 만든 도체의 금속선인 전깃줄과, 전기절연물로 싼 여러 개의 전선을단을 지어 다시 겹을 포장한 케이블이 해당됨. 특히 전선용 재료, 나선, 접속함, 전선케이블, 보호외피 등 전선에 관련된 부분품이 포함됨.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절연테이프(G3909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5B	6	안테나선	G3909B	*
	9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G3909B	

〈 G3906B 민생용 전기기계기구 〉

가정용 및 업소용 제반 전기기계기구가 해당되나, TV·라디오 등 음향기계기구는 제외됨. 라디오수신기·시계라디오·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텔레비전수신기·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음성주파기기(G3709A)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6B	7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G3907A	

8	전기면도기, 전기손톱깎이, 전기이발기	G3907A	
9	전기다리미, 전기버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G3907A	
10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G3907A	
1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G3907A	
21	전기빗, 전기칫솔	G3907A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전기식 다리미”(8류) : G1824

〈 G3907A 라디오수신기·시계라디오·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텔레비전수신기·텔레비전위성방송 수신기·음성주파기기 〉

민생용 전기기계기구(G3906B), 반도체소자(G3908B)와 유사함.

〈 G3907B 전기통신기계기구 〉

유선·무선 또는 그 밖의 전기작용 및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음성·음향·영상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통신기계기구로서, 전화기기, 유선통신기기, 반송기기, 방송용 기기, 무선통신기기, 무선응용기기,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전기통신기기 및 그 부품 등이 해당됨. 반도체소자(G3908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7A	9	전기음향영상기기	G3906B, G3908B	
G3907B	9	전기통신기기	G3908B	

〈 G3908 전자응용기계기구 〉

로봇, 전자응용기기 등 전자응용기계기구가 해당됨.

〈 G3908B 반도체소자 〉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회로를 이용한 전자회로소자로서, 트랜지스터·발광소자 등이 해당됨. 라디오수신기·시계라디오·오디오 및 비디오 수신기·텔레비전수신기·텔레비전위성방송 수신기·음성주파기기(G3709A)와 전기통신기계기구(G3907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8	7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9	전자응용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관		
G3908B	9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G3907A, G3907B	

〈 G3909 전기재료 〉

전기나 열의 도체 사이에 전기나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전기절연물 등이 해당됨.

〈 G3909B 전기절연용 고무제품·절연테이프〉

전선 및 케이블(G3905B)과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3909	9	전극,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17	전기절연재료		
G3909B	17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전기절연테이프	G3905B	*

G40 연료, 공업용 유(공업용 유지는 제외), 납류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1	4	고체연료		
G4002	4	기체연료		
G4002B	4	액체연료	G4003B	
G4003B	2	방청유	G4002B	
	4	공업용 유(油)	G4002B	
G4004	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16	봉랍		*
	28	스키용 왁스		*
G4006	1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 G4001 고체연료 〉

연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료물질(고체)이 해당되나, 핵연료 물질인 우라늄 등은 연료가 아니므로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1	4	고체연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우라늄”, “원자로용 연료”, “토륨”, “플루토늄”(1류) : G3202

〈 G4002 기체연료 〉

고체연료와 형태는 다르지만, 연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료물질(기체)이 해당됨.

〈 G4002B 액체연료 〉

휘발유 · 등유 · 중유 · 경유 · 연료용 변성 알콜 등이 해당되나, 알콜이 연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액체연료에서 제외됨. 공업용 油(G4003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2	4	기체연료		
G4002B	4	액체연료	G4003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라이터용 연료”(4류) : G4102

〈 G4003B 공업용 油 〉

원유(原油)를 정제하여 얻은 정유(精油)중에서 주로 연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것이 해당됨. 액체연료(G4002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3B	2	방청유	G4002B	
	4	공업용 油(油)	G4002B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공업용 유지”(4류) : G0705
- “윤활제”(4류) : G1001
- “가죽보존용 오일”(4류) : G1506
- “전기절연유”(17류) : G3909

〈 G4004 납류 〉

동물·식물·광물성 납으로서, 납 자체로서 거래되는 경우와 그 제조제품으로서 등화용의 양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4	4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16	봉랍		*
	28	스키용 왁스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죽용 왁스”, “광택왁스”(3류) : G1506

〈 G4006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유압회로용액 〉

기계에 필요한 제어용 용액인 브레이크액이나, 겨울철에 자동차엔진의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쓰이는 액체인 부동액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006	1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부동제”(1류) : G1001

G41 성냥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101	34	성냥		
G4102	4	라이터용 연료		
	11	가스점화기		
	34	흡연용 라이터		

〈 G4101 성냥 〉

문지르면 불이 일어나는 약제를 작은 나뭇개비 끝에 묻힌 발화제구의 한가지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101	34	성냥		

〈 G4102 라이터 〉

성냥을 제외한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 작은 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102	4	라이터용 연료		
	11	가스점화기		
	34	흡연용 라이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자동차용 여송연라이터”(9류) : G3705

G42 총포·총포탄·화약·폭약·화공품, 그들의 보조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201	13	총(銃), 포(砲)		
	20	총가		*
G4202	6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13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19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 G4201 총포류 〉

탄환을 발사시키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과 부속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201	13	총(銃), 포(砲)		
	20	총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기용 조준망원경”(9류) : G3402
- “장난감 권총”(28류) : G4301
- “경기용 피스톨”(28류) : G4303

〈 G4202 총포탄·화약 및 화공품과 그 보조기구 〉

총포탄과 그 부품 및 부속품, 폭발물 중 폭연에 의해 추진 작용을 하는 화약 및 파괴적 폭발의 용도에 제공되는 폭약, 화약 또는 폭약을 가공하고 포장한 화공품(火工品)과 그 보조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202	6	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13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19	비금속제 조립식 로켓발사대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완구용 뇌관”(28류) : G4301

G43 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1	20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28	완구, 인형		
G4302	28	오락용구		
G4303	6	금속제 다이빙 보드,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아이젠(Eisen)		
	8	골프병커 정리용 씨레, 펀치링, 피켈(Pickel)		
	9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에르고미터(Ergometer)		
	19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0	비금속제 텐트 팩, 캠핑용 침낭		
	21	코펠		*
	2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25	스포츠전용 의류		
	27	스포츠용 매트		
	28	스포츠용구		
G4304	20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28	낚시용구		
	31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G4305	6	박차		*
	18	마구, 승마용구		

〈 G4301 완구 및 인형 〉

아이들의 놀음놀이의 재료가 되는 장난감과 사람·동물 등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장난감인형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1	20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28	완구, 인형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유모차”(12류) : G3707
- “마네킹”(20류) : G5205

〈 G4302 오락용구 〉

피로나 긴장을 풀고 즐겁게 노는 데 쓰이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2	28	오락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컴퓨터게임프로그램”(9류) : G3908

〈 G4303 운동구류 〉

운동 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 대부분이 해당됨. 특히 각종 스포츠에 사용되는 기구, 운동구류 중 구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빙보드, 일상적으로 입는 의류가 아닌 스포츠용 특수 의복, 운동용 매트 등이 포함되나, 운동용 특수신발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3	6	금속제 다이빙 보드,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아이젠(Eisen)		
	8	골프벙커 정리용 썰레, 펀치링, 피켈(Pickel)		
	9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Nose clip), 에르고미터(Ergometer)		
	19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20	비금속제 텐트 팩, 캠핑용 침낭		
21	코펠		*
2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25	스포츠전용 의류		
27	스포츠용 매트		
28	스포츠용구		

〈 G4304 낚시용구 〉

낚시에 사용되는 기구와 낚시용 미끼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4	20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28	낚시용구		
	31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낚시용화”(25류) : G2701
- “낚시용 조끼”(25류) : G4503

〈 G4305 승마용구 〉

말을 타는 것과 관련 있는 용구임.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305	6	박차		*
	18	마구, 승마용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승마화”(25류) : G2701
- “승마복”(25류) : G4303

G44 보석·귀금속과 그들의 모조품, 그들을 원료로 한 제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401B	14	보석, 인조보석	G4509A	
G4402	14	귀금속, 모조귀금속		

〈 G4401B 보석 및 그 모조품 〉

천연원석(天然原石)을 조각·연마한 보석 그 자체와 이들 보석을 모조한 것이 해당됨. 장신용품(G4509B)과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401B	14	보석, 인조보석	G4509A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보석의 원석”(14류) : G1601
- “보석상자”(14류) : G2601
- “보석제 액세서리”(14류) : G4509A
- “상아(미가공 또는 반가공품)”(20류)는 G2404(치아류)로 분류됨.

〈 G4402 귀금속류 〉

금·은·백금 따위와 같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지 않고, 화학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항상 아름다운 광택을 지닌 금속인 각종 귀금속과 그 제품 및 도금제품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402	14	귀금속, 모조귀금속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귀금속제 액세서리”(14류) : G4509A

G45 피복, 액세서리용품, 조화(造花)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1	10	수술복		
	25	겉옷, 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G4502	25	한복		
G4503	25	속옷, 스웨터, 셔츠		
G4504	9	방호용 장갑, 방호용 귀마개		
	10	의료용 장갑		
	16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종이제 톱받이		
	17	절연용 장갑		
	21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25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양말, 스타킹, 발싸개, 방한용 장갑,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26	의류용 어깨 패드		*
G4505	9	헬멧		
	25	모자		
G4506	9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10	의료용 마스크		
	25	방한용 마스크		
G4507	9	방호용 피복		
	25	방수용 피복		
G4508	25	의복용 벨트		
	26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
G4509A	6	금속제 버클	G4401B, G4510B	*
	14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제 액세서리	G4401B, G4510B	
	16	목주	G4401B, G4510B	*
	26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G4401B, G4510B	
G4510B	14	키프스(Cuffs) 단추	G4509A	
	21	단추고리	G4509A	*
	26	단추, 지퍼	G4509A	
G4511	21	때밀이용 스펀지		*
	24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보자기		

G4512	26	조화		
	31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 G4501 겉옷, 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

스포츠전용의류·한복을 제외한 일상용의 겉에 입는 옷 중 직물과 장신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것이 해당됨. 단 속옷, 장갑, 모자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1	10	수술복		
	25	겉옷, 외투(스포츠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명재킷”, “수영재킷”(9류) : G3605
- “스포츠전용 아노락”(25류) : G4303

〈 G4502 한복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상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2	25	한복		

〈 G4503 속옷 · 스웨터 · 셔츠 〉

겉옷 안에 입는 것으로서 잠옷, 수영복, 칼라커프스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3	25	속옷, 스웨터, 셔츠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방탄조끼”(9류) : G3605
- “스타킹”, “운동용 스타킹”(25류) : G4504

〈 G4504 기타 피복류 〉

장갑을 비롯한 기타 부속적인 피복 등이 해당되나, 스포츠용 특수장갑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4	9	방호용 장갑, 방호용 귀마개		
	10	의료용 장갑		
	16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종이제 텍받이		
	17	절연용 장갑		
	21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25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양말, 스타킹, 발싸개, 방한용 장갑,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26	의류용 어깨 패드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료용 탄성스타킹”(10류) : G1103
- “경기용 장갑”(28류) : G4303
- “팬티스타킹”(25류) : G4503

〈 G4505 모자류 〉

오토바이나 공장 현장에서 사용되는 보호용 헬멧과 방한용 모자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5	9	헬멧		
	25	모자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영모자”(25류) : G4503

〈 G4506 마스크류 〉

먼지나 병원균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덮는 위생용품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6	9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10	의료용 마스크		
	25	방한용 마스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용 마스크(Beauty masks)”(3류) : G1204
- “야구용 마스크”, “펜싱용 마스크”(28류) : G4303

〈 G4507 방화피복류 〉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거나 방수처리가 된 피복,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입는 특수의복인 잠수복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7	9	방호용 피복		
	25	방수용 피복		

〈 G4508 혁대류 〉

피복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벨트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8	25	의복용 벨트		
	26	소매 흐름방지용 탄력밴드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명벨트”(9류) : G3605

〈 G4509A 장신용품 〉

몸이나 머리를 치장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는 용품이 해당됨. 특히, 보석을 목걸이, 반지, 브로치 등으로 가공한 것은 여기에 포함됨. 보석 및 그 모조품(G4401B) 및 단추류(G4510B)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09A	6	금속제 버클	G4401B, G4510B	*

	14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제 액세서리	G4401B, G4510B	
	16	목주	G4401B, G4510B	*
	26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	G4401B, G4510B	

〈 G4510B 단추류 〉

피복 등의 일정한 곳을 열거나 닫기 위하여 달아놓은 것이 해당됨. 장신용품(G4509A)와 유사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10B	14	커프스(Cuffs) 단추	G4509A	
	21	단추고리	G4509A	*
	26	단추, 지퍼	G4509A	

〈 G4511 포제(布制) 신변품 〉

직물제의 손수건, 수건 등 가정용 섬유제품으로서 타 유사군코드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11	21	때밀이용 스펀지		*
	24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보자기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종이제 수건”(16류) : G2102

〈 G4512 조화(造花) 〉

생화(生花)를 모조한 것으로서, 지제, 포제, 플라스틱제 등으로 만든 것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512	26	조화		
	31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 “생화”(31류) : G0212

G46 누에·누에고치 및 양잠기계기구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601	22	누에고치		
	31	누에, 누에씨		
G4602	7	양잠기계		

〈 G4601 잠종과 누에고치 〉

견직물 방직의 원재료가 되는 누에고치나 누에, 누에씨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601	22	누에고치		
	31	누에, 누에씨		

〈 G4602 양잠기계 〉

누에를 치는 데 관련된 기계기구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602	7	양잠기계		

G47 원료섬유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1	22	미가공 면(綿)섬유		
G4702	22	미가공 견(絹)섬유		
G4703	22	미가공 마(麻)섬유		
G4704	21	브러시용 모		
	22	미가공 모(毛)섬유		
G4705	17	비직물용 화학섬유		
	22	직물용 화학섬유		
G4706	17	비직물용 무기섬유		
	21	비절연용 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22	직물용 무기섬유		

〈 G4701 미가공 면섬유 〉

방직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면섬유가 해당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1	22	미가공 면(綿)섬유		

〈 G4702 미가공 견섬유 〉

방직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견섬유가 해당되나, 누에고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2	22	미가공 견(絹)섬유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누에고치”(22류) : G4601

〈 G4703 미가공 마섬유 〉

방직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마섬유로서 대마·저마·황마 등이 해당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3	22	미가공 마(麻)섬유		

〈 G4704 미가공 모섬유 〉

방직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모섬유가 대부분 해당되나, 최종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4	21	브러시용 모		
	22	미가공 모(毛)섬유		

〈 G4705 화학섬유 〉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등 유기질 화학섬유로서, 비직물용 및 직물용 인조섬유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5	17	비직물용 화학섬유		
	22	직물용 화학섬유		

〈 G4706 무기섬유 〉

탄소이외의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과 일부의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비직물용 및 직물용의 무기질 섬유가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706	17	비직물용 무기섬유		
	21	비절연용 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22	직물용 무기섬유		

G48 사(紗)류

〈 G4801 사(絲)류 〉

직물, 편물 등에 사용되는 단사 및 연사를 재료별로 구분 없이 종합한 것이 대부분 해당되나, 수술용 봉합사, 낚시용 사(絲)등 특정한 용도로 한정된 것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801	17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21	비절연용 유리섬유사,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23	직물용 실(絲)		
	26	자수용 금속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수술용 봉합사”(10류) : G1103

G49 직물류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901	17	석면직물		
	24	직물		
G4902	24	메리야스 생지(生地)		
	26	자수레이스용 생지		*
G4903	24	세폭(細幅)직물		
G4904	17	석면제 펠트(Felt)		
	24	부직포(不織布), 직물펠트		

〈 G4901 직물 〉

생지(生地)단계 이외의 것으로서, 피륙 및 그와 비슷하게 섬유로 짠 대부분의 것이 해당되나, 세폭직물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901	17	석면직물		
	24	직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절연용 포”(17류) : G3909
- “세폭(細幅)직물”(24류) : G4903

〈 G4902 편물 〉

생지(生地)단계의 것만 해당되므로, 스웨터나 메리야스와 같은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902	24	메리야스 생지(生地)		
	26	자수레이스용 생지		*

〈 G4903 세폭직물 〉

비단이나 인조견 등으로 좁다랗게 짠 직물로서, 리본직물이나 밴드직물, 테이프직물과 같이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나, 2차 가공을 한 제품 또는 머리장식용 리본 등은 제외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903	24	세폭(細幅)직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25류) : G4508
- “머리리본”, “헤어밴드(장신구)”(26류) : G4509A

〈 G4904 부직포 및 펠트 〉

짜지 않고 섬유를 그대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천 모양으로 만든 것이 해당됨. 단, 일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로 재단(裁斷)된 것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4904	17	석면제 펄트(Felt)		
	24	부직포(不織布), 직물펠트		

G50 망·끈류(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001	6	금속제 로프		
	17	고무끈, 석면제 끈		
	18	가죽끈		
	22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G5002	6	금속제 망(網)		
	17	석면제 망		
	19	비금속제 방충망		
	2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 G5001 끈류 〉

일반적인 비금속제 끈류가 해당되나, 일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재단(裁斷) 또는 특수 가공을 한 것은 포함되지 않음.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001	6	금속제 로프		
	17	고무끈, 석면제 끈		
	18	가죽끈		
	22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 G5002 망류 〉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망류가 해당됨. 다만 어망, 방충망 등은 특수 용도의 것이지만 여기에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002	6	금속제 망(網)		
	17	석면제 망		
	19	비금속제 방충망		
	22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구멍망”, “안전망”(9류) : G3605
- “테니스네트”(28류) : G4303

G5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 G510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

여러 종류의 악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특히, 전적으로 악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거래되는 악기전용케이스나,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데 실제 필요한 악기 이외의 연주 보조품인 지휘봉, 악보대, 악보끼우개 등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101	9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15	악기, 연주보조용품		
	28	고적대 지휘봉		*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오디오 및 비디오용 미처리컴팩트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용 콤팩트디스크”(9류) : G3907A
-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9류) : G5201

G52 인쇄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서화, 조각, 사진 및 모형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1	9	자기식 카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16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20	플라스틱제 비자기식 열쇠카드		
G5202	16	서화(書畵)		
G5203	6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14	귀금속제 조각품		
	16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19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21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G5204	9	노광(露光)된 필름		
	16	사진, 청사진		
G5205	16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20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21	인조알		
	26	인조과일		
G5206	9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16	서적, 정기간행물		

〈 G5201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

음악이 아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인쇄물이나, 글씨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발간하는 신문·팜플렛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1	9	자기식 카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16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20	플라스틱제 비자기식 열쇠카드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9류) : G5101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9류), “서적”, “정기간행물”(16류) : G5206

〈 G5202 서화 〉

그림, 글씨 및 판화의 복제물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2	16	서화(書畵)		

〈 G5203 조각류 〉

쇠붙이·흙·돌·나무 등에 그림·글씨·사람·짐승 등을 새기거나 빚은 것으로서, 복제물도 포함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3	6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		
	14	귀금속제 조각품		
	16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19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21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 G5204 사진류 〉

촬영한 필름이나, 사진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4	9	노광(露光)된 필름		
	16	사진, 청사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노광 감광필름”(1류) : G3404B

〈 G5205 모형물 및 모형제작용 재료 〉

원형을 줄여서 만든 본 같은 것이나 모형제작용 재료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5	16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20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21	인조알		
	26	인조과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마네킨형”, “축소모형차량”(28류) : G4301

〈 G5206 서적·정기간행물류 〉

음악이 아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인쇄물이나, 글씨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발간하는 서적류나 정기간행물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206	9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출판물		
	16	서적, 정기간행물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9류) : G3908
-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9류) : G5101

G53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G5301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

특수세라믹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등이 해당됨.

유사군	상품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상품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G5301	1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V.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

V.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

S01 광고업

〈 S0101 광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건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물 배포, 판매 촉진시범, 광고자료 대여, 게시판임대벽보부착 등이 해당되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소비를 설득하는 데 목적을 두는 활동도 포함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101	35	간행물광고업, 라디오광고업, 영화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공간 및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건본배포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쇼윈도우장식업, 상품전시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광고디자인업”(42류) : S1213

S02 금융업

〈 S0201 금융업 〉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의 활동이 포함됨. 대여, 신탁, 환전업 및 할부판매대행업, 주식 및 증권중개업과 복권발행업 및 전당포업, 보증담보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201	36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보석보증업”(36류) : S0301
- “재무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36류) : S1204

S03 보험업

〈 S0301 보험업 〉

저축요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모든 보험업과 보험통계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301	36	보험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보증금대여업”, “보증업”, “보증담보업”(36류) : S0201

S04 토목·건축업

〈 S0401 토목·건축업 〉

계약 또는 자기 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증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 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토목공사 및 관련 구축물 설치공사, 조립식 건물의 설치공사와 기타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됨. 실내장식업과 굴정업, 건축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401	37	종합건설공사업, 전문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축공사상담업, 건축장비임대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승강기설치업”(37류) : S0501
-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36류) : S1212
- “건축상담업”, “건축설계업”, “골프장설계업”, “실내장식디자인업”(42류) : S1213
- “건축감리업”, “실내장식업”, “판이음업”(37류) : S1737

S05 수리·수선업

〈 S0501 수리·수선업 〉

낡거나 허름한 것을 손보아 고치는 수선업이나, 고장이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수리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501	37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비고 :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은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건물보수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관개시설 설치 및 보수업”, 창고 건설 및 보수업,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및 보수업”(37류) : S0401
- “건물방음설비설치공사업”, “전기설비설치공사업”, “통신설비설치공사업”, “파이프라인설치공사업”(37류) : S0401

S06 통신업

〈 S0601 통신업 〉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의 접수,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601	38	전화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밴(VAN)통신업, 전자우편업, 컴퓨터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통신사(通信社)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S07 방송업

〈 S0701 방송업 〉

일반대중을 위한 시청각 생방송용 또는 기록매체의 의한 유·무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701	38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라디오 및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41류) : S1101

S08 운송업

〈 S0801 운송업 〉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운수에 의하여 일정노선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터미널시설 제공, 화물운송대리 등의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물건의 장소적 변동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하는 것으로서, 물건운송, 여객운송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801	39	운송업, 운송기구 및 장비의 임대업		

S09 창고업

〈 S0901 창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또한 관세부와 지역에 설치되는 무역상품 보관시설 운영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보세 창고는 보세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세분항목에 분류함. 타인을 위하여 창고나 건물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서비스업(보관은 동산에 한정)이며, 창고업과 관련된 임대업도 포함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0901	39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주차업”, “차고임대업”(39류) : S0801

S10 특수가공업

〈 S1001 특수가공업 〉

물품 또는 무기·유기물질의 기계적·화학적 처리 또는 변형 서비스업이 포함됨.

- 물품 또는 물질의 변형 및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모든 가공(예: 의류의 염색)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됨. 따라서 보수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수선업에 속하지만 이러한 변화(예 : 자동차 범퍼의 크롬 처리)가 수반된다면 여기에 해당됨.
- 건물 이외의 물질 또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재료처리 서비스업(예 : 절단, 성형, 연마 또는 금속도금 서비스업)
- 금속 또는 비금속, 의류 등에 필요한 특수가공업 및 처리업이 해당됨. 또한 어떤 물체를 가공 또는 변형하여 원래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업이 이에 속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001	37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타이어 재생업		

	40	섬유 및 의복가공업, 모피 및 원피가공업, 신발가공업, 금속가공업, 도금업,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업, 석재가공업, 비금속광물 및 그 제품의 가공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종이가공업, 음식료품가공업, 재료가황처리업, 자화처리업, 석유가공처리업, 용수처리업, 마구(馬具)가공업, 재료처리정보제공업, 폐기물재생업, 폐유재생업		
--	----	--	--	--

S11 연예업

〈 S1101 연예업 〉

대중적인 연극·음악·춤·희극·만담·마술 따위의 예능을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서비스업임. 서커스업, 쇼프로그램 제작업, 모델관리업과 연예관련 임대업 등이 포함됨.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101	41	연예물제작배급업, 연예물공연업, 무대세트나 텔레비전 스튜디오 조명기구의 임대업, 무대장치임대업, 영사기 및 그 부속품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레코드테이프대여업, 녹음음반대여업, 비디오테이프대여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임대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연예인매니저업”(35류) : S1735
- “미인선발대회개최업”(41류) : S1741

S12~S17 구한국분류 제101류 내지 제111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 S1201 농업·임업·축산·어업·광업관련서비스업 〉

땅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작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누에를 치거나, 이득을 얻고자 삼림을 경영하거나, 가축을 기르고 그 생산물을 가공하거나, 물고기·조개·바닷말 등을 따든지 양식을 하여 수입을 얻거나, 광물을 채굴하거나 그것을 제련하는 것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임.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1	37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기계장비임대업		
	40	목재벌목업		
	41	동물사육지도업, 어업기술지도업		
	44	농업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비농업용 해충구제업”(37류) : S1281
- “꽃꽂이업”, “잔디관리업”,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정원디자인업”, “조경디자인업”, “조경업”, “애완동물손질업”, “화환제작업”(44류) : S1744

〈 S1202 인쇄·출판관련서비스업 〉

석판인쇄, 옵셋인쇄 등의 인쇄업과 편집업 그리고 저작물을 책으로 꾸며 세상에 내놓은 출판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2	40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41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 S1204 법무·세무 및 회계관련서비스업 〉

특허이용업·저작권관리업 등 법률관련서비스업, 세무서류의 작성이나 세무상담, 세무대리 등 세금관련서비스업 및 재무관련서비스업,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위촉받은 회계감사나 감정 등 회계관련서비스업 등이 해당됨. 특히 기업의 노무관리업무를 맡아보는 전문직업인 공인노무사업도 포함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4	35	회계업, 세무대리업		
	36	재무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45	법무서비스업		

〈 S1205 의료·보건서비스업 〉

질병치료, 제약, 병원경영, 의료기기 임대 등 의료관련서비스업과 건강관련 보건서비스업이 해당됨. 특히 의약품판매알선업·세균연구업·요양소업·가축치료보조업·의료보조업 등이 포함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5	35	약제 도매업, 약제 중개업, 의약품판매알선업		*
	39	혈체어임대업		
	40	치기공(齒技工)업		
	42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44	병의원업, 의료보조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환자이송업”(39류) : S0801
- “휴양소업”(44류) : S1210

〈 S1206 요식·주점·유흥업 〉

음식을 파는 요식업(식당업), 술을 파는 주점업(술집), 음식이나 술 등을 팔거나 유흥시설을 빌려주는 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6	4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43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제과점업		

〈 S1207 숙박업 〉

수수료 또는 계약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숙박업에 결합·운영되는 음식제공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침대차의 운영도 여기에 포함됨.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 따위와 같이 손님을 숙박시키고 숙박료를 받는 서비스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7	35	호텔경영지원업		
	41	학교기숙사업		
	43	하숙업, 숙박시설안내업, 모텔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야영장시설제공업”(43류) : S1210
- “양로원업”, “탁아소업”(43류) : S1743

〈 S1209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

박물관시설제공업, 사적명소관리경영업 등 문화관련서비스업과 미술관 경영업 등 예술관련 서비스업,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 관련서비스업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09	41	개인교수업, 학원경영업, 도서관경영업, 과학관경영업,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 제공업, 유학알선업,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비고 : 학원경영업은 교육대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동물사육지도업”, “어업기술지도업”,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 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41류) : S1201
-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41류) : S1206
- “건강체조지도업”, “단전호흡지도업”, “댄스지도업”, “레크리에이션지도업”, “명상훈련업”, “무술지도업”, “사교지도업”, “수상스키지도업”, “수영지도업”, “스키지도업”, “스포츠댄스지도업”, “스포츠지도업”, “요가지도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유도지도업”, “체육교육업”, “체육실기지도업”, 체조지도업, “태권도지도업”(41류) : S1210
- “미용기술지도업”(41류) : S1283
- “동물훈련업”, “애완동물훈련업”(41류) : S1741

〈 S1210 스포츠·오락서비스업 〉

신체단련이나 경쟁·유흥성 등의 요소를 포함한 신체운동관련 서비스업과 여가시간에 피로나 긴장을 풀기 위한 게임, 노래, 춤 따위로 즐겁게 노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10	39	잠수복대여업		
	41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스포츠 및 오락의 흥행업		
	43	야영장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44	휴양소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연예물공연업”(41류) : S1101

〈 S1212 부동산 등 관리·임대·감정관련서비스업 〉

토지, 주택, 건물 등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하거나, 부동산 등을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12	36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43	방(房)임대업, 이동식가옥임대업		

〈 S1213 설계 및 디자인관련서비스업 〉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재료·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같은 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과 관련된 설계관련서비스업과 미술·공예작품 등을 만들 때 그 형상이나 모양·색채·배치 등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도안하는 것과 같은 디자인 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교유사	비고
S1213	42	건축설계 및 상담업, 제품설계업, 제도업, 광고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인쇄미술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실내장식디자인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의상디자인업”, “직물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42류) : S1214
- “반도체디자인업”, “웹디자인업”, “컴퓨터마이크로칩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컴퓨터하드웨어디자인업”(42류) : S1233B
- “정원디자인업”, “조경디자인업”(44류) : S1744

〈 S1214 의상서비스업 〉

옷을 만들어 파는 양복점업, 양장점업이나 의복임대업, 패션정보업 등 의상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교유사	비고
S1214	40	봉제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41	패션쇼개최업		
	42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45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 S1215 여행·관광서비스업 〉

다른 지방이나 나라를 가거나 구경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서, 여행예약·여행안내·교통편의 주선, 관광안내 등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교유사	비고
S1215	39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업

- “관광운송업”(39류) : S0801
- “호텔예약업”(43류) : S1207

〈 S1216 사진서비스업 〉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필름·영화필름 등을 현상·인화하는 것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16	35	사진복사업		
	40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41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 S1230~S1234 조사·정보관련서비스업 〉

영업, 공업 또는 상업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관리를 보조하는 서비스업과 보도 및 컴퓨터 관련업 등이 주로 해당됨.

S1231, S1231B, S1232, S1233B, S1234로 구분하며 각각 그 유사범위를 달리 볼 수 있다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30	35	구 S1203 중 미분류건		*
	36	구 S1203 중 미분류건		*
	42	구 S1203 중 미분류건		*
S1231	35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S1231B	35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S1233B	
	39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S1233B	
S1232	36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S1233B	42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자료 및 문서의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임대업	S1231B	
S1234	41	보도업	S1231B	

〈 S1280~S1284 환경·위생서비스업 〉

주변환경, 물품 또는 인체를 깨끗이 하거나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해당됨.
S1281, S1282, S1283, S1284로 구분하며 각각 그 유사범위를 달리 볼 수 있다.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280	37	구 S1208 중 미분류된 서비스업		*
	42	구 S1208 중 미분류된 서비스업		*
S1281	37	구두닦이업, 산업설비청소업, 도로청소업, 건축물청소업, 방역소독업, 세차업		
	40	공기정화 및 탈취업, 분뇨처리업, 폐기물 및 위험물처리업		
	42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S1282	37	세탁업		
S1283	41	미용기술지도업		
	42	화장(化粧)연구업		
	44	이미용업, 입욕시설제공업, 마사지업, 문신업, 지압업, 안마업, 위생시설임대업		
S1284	45	장의업, 묘지관리업, 납골당관리업		

〈 S1310~S1312 도소매·판매대행·판매알선·중개관련서비스업 〉

상품의 도소매업, 상품판매를 대행하거나 알선해주는 서비스업,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제3자의 입장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들어 어떤 일을 주선해 주는 중개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됨.

S1311, S1312로 구분하며 각각 그 유사범위를 달리 볼 수 있다.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310	35	구 S1211 중 미분류된 서비스업		*
	36	구 S1211 중 미분류된 서비스업		*
S1311	35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비고 :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은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S1312	35	수출입업무대행업		
	36	무역중개업, 오피업, 통관절차대행업		

〈 S1370 사무처리업 〉

기업의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업이 해당됨.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370	35	사무처리업		

〈 S17 따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

유사군	서비스 업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예시)	비고유사	비고
S1700		구 S1217에서 S1735~S1745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
S1735	35	35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36	36	36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37	37	37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38	38	38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39	39	39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0	40	40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1	41	41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2	42	42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3	43	43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4	44	44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S1745	45	45류에 속하는 구 S1217 해당 서비스업		*

VI. 판례반영목록

Ⅵ. 판례반영목록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특허청예규제36호, 2006. 11. 29. 개정)에서 정하는 유사판단기준과 다르게 판단한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상표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목록을 “판례반영목록”이라 하며, 동 심사기준 “유사 여부 판단의 특례 마)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의해 유사하게 판단하는 상품세목간 또는 서비스업세목간이라 하더라도 본 판례반영목록에 명시된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한다.

(수록된 판결일자 기간 : 1984.3.27. ~ 2004.5.28.)

판결일자	판결번호	본원상품	인용상품	9판 유사군	9판 류구분	비유사 이유	추가일
1991. 3.27.	90후 1178	피혁 마무리제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G1001	01	상품의 용도나 수요자층의 차이가 있어 비유사	2002.7.1.
1997. 6.27.	96후 1903 1910	직포제, 분산조제, 발수제, 토양안정제, 방추제	디젤연료 분산제, 가솔린 및 디젤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가솔린 유화 조절 첨가제	G1001	01	용도, 형상, 판매처, 수요자의 범위가 달라 비유사	2002.7.1.
2004. 1.27.	2002후 1560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	향, 향료 (혼상제구 용도)	G1202	03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달라 비유사	2007.2.
1992. 6.9.	91후 1892	보온도시락용 카바	서류가방, 학생용 가방, 트렁크, 란도셀, 보스틴 백	G2501	18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판결 일자	판결 번호	본원상품	인용상품	9판 유사군	9판 류구분	비유사 이유	추가일
1984. 3.27.	82후 5	엘리베이터	전동 호이스트, 콤베이어, 크레인	G3701	07 09 12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1999. 4.8.	99허 1072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경기용자동차, 구급차,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카, 소방차	G3705	12	완제품과 부품 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형상 등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생산자 및 판매처도 달라 비유사	2002.7.1.
1998. 7.28	97후 1658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용 실린더 헤드,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	전차	G3705	12 13	완제품과 부품 의 관계에 있으나 생산, 판매, 수요자의 범위가 달라 비유사	2002.7.1.
1990. 7.10.	89후 2090	유모차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	G3707	12	품질, 용도, 형 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1992. 5.12.	91후 1793	비디오테이프	전화기, 레이더 기계기구	G3907	09	품질, 용도, 형 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1993. 5.11.	92후 2106	위성방송용 해독기, 위성방송 수신용 주파수대 변환기	전화기	G3907	09	품질, 용도, 형 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판결 일자	판결 번호	본원상품	인용상품	9판 유사군	9판 류구분	비유사 이유	추가일
2000. 7.13.	99허 9236	내연엔진용 소프트 웨어 및 매뉴얼	초음파응용 탐지기, 진공관, 트랜지스터	G3908	09	품질, 형상, 용도 가 상이하고,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유통 방법 등이 전혀 상이하여 비유사	2002.7.1.
1990. 11.27.	90후 977	컴퓨터정보케리어, 일반용컴퓨터	모터 자동 제어 기계기구	G3908	09	품질,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1996. 4.26.	95후 859	집적회로	전자복사기	G3908	09	형상, 용도가 다 르고 생산업체, 판매처, 수요자 층도 달라 비유사	2002.7.1.
2003. 10.10.	2001후 1495	컴퓨터지원설계 소프트웨어, 컴퓨터이용제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정보의 조직적 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	반도체, 마이크로 회로, 직접회로, 전자회로, 반도체부품	G3908	09	용도, 수요자범 위, 생산 및 판매 부분 등이 달라 비유사	2007.2.
1987. 2.10.	85후 113	당구용 쿠션	다이아몬드 게임	G4302	28	용도, 형상 및 거 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2000. 9.28.	2000허 1429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골프채, 골프용 공, 골프용 장갑, 캐디백	G4303	28	형상, 용도 및 수 요자층이 상이하고 생산 자, 판매자도 달 라 비유사	2002.7.1.

판결 일자	판결 번호	본원상품	인용상품	9판 유사군	9판 류구분	비유사 이유	추가일
1987. 8.25.	86후 152	라켓	철봉, 뽕틀, 안마, 미용제조기, 트위 스트머신, 트림벨 트, 멤벨, 롤어웨이, 씻엎디스크, 제자리 걸음기	G4303	28	용도, 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	2002.7.1.
2000. 7.28.	98후 850	등산캠핑용 텐트, 등산백 받침대, 코헤르, 골프용 장갑, 라켓	스키이, 스틱, 스키이 케이스, 스키이 썰, 스키용장갑, 스키용 귀마개	G4303	22 28	생산 및 판매되 는 경로, 수요 자, 상품의 형 상과 용도 등이 달라 비유사	2007.2.
1997. 1.20.	96후 924	일회용기저귀	양말, 장갑	G4504	16 25	형상, 용도가 다르고 생산업 체, 판매처, 수 요자층도 달라 비유사	2002.7.1.
2004. 5.28.	2002후 680	복어요리 전문식당체인업, 아귀찜요리 전문식당체인업	휴게실업	S1206	43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영업 주체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어 비유사	2007.2.

상품·서비스업 유사군코드 해설집

- 니스9판 기준 -

발 행 일 : 2007. 10.

발 행 자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1심사팀

제작/편집 : 양승현/김원규/권오석/이재희/박철균/김신용

연 락 처 : 042-481-5338, nice114@kipo.go.kr